장애인과 빈곤

Md.b.3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

1994. 6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 분류기호 | 자료번호
WS | F.4 장애인 | 85

장애인과 빈곤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 보고서

1994.6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사회는 지난 60년대 이후 선성장, 후복지라는 명분 아래 경제성장을 국가 제1의 목표로 하여 국민소득 7천달러에 세계 12대교역국이라는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전체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빈민층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고, 빈곤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60년대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농민과 도시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빈민층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재생산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도시빈민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으로는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노인, 모자세대, 소년·소녀세대, 폐질자, 장애인 등으로 대표된다. 94년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 가구주는 44,988명이고 이중 장애인 가구주는 6,679명(14.8%)으로 이들은 간신히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고 있을 뿐이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장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특히 빈곤과 장애가 결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억압과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문제와 장애인문제는 개인의 책임, 또는 개인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과 장애인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현재 전체 빈민장애인중 일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몇몇 서비스가 수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만으로는 그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로 인하여 빈민장애인 문제 해결과 생활개선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는 빈민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빈민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한 것은 아니다. 연구의 대상자는 빈민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빈민장애인을 선정하는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빈곤함'에 있어서 일정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실태나 문제를 빈민 장애인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

가 있음을 인정한다.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반 도시빈곤층이나 장애인과는 또다른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빈민장애인의 요구는 전장애인의 요구를 포함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기존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문제 접근과는 유별화된 결론과 정책을 내오려고 한다.

그간 장애인에 대한 여러차례의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빈민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조사는 이번이 최초로 실시된 것이며, 그 결과는 빈민장애인 자신과 빈민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4백만 장애인 전체와 정부, 사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빈민장애인들의 생활실태가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빈민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빈민장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로 설 수 있는 몇가지 대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연구가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접근하는데 자료로서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많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분들과 재정지원을 해준 태평양복지재단과 그리고 연구과정이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94년 6월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연구실

목차

I. 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

1. 서론 1
2. 빈곤의 개념 1
3.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2
   1) 빈곤에 관한 현상론적 관점 2
   가. 기능주의적 관점 2
   나. 갈등론적 관점 3
   다. 상호작용론적 관점 3
   라. 문화론적 관점 4
   2) 빈곤에 관한 사회구조적 관점 4
   가. 주변부 자본주의론 4
   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상대적 과잉인구론적 관점) 5
4. 도시빈민의 형성과정과 실태 6
   1)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6
   2) 도시빈민의 실태 7
   가. 소득 7
   나. 직업 7
   다. 저축과 부채 7
   라. 나이 8
   3)가구원 특성 8
5.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를 통해 본 장애인의 빈곤 8
6. 생활보호사업의 변천과정 및 내용 11
   1)생활보호사업의 변천과정 11

가. 조선구호령 공포·실시 11
나. 미군정기 12
다. 제1공화국과 6.25 12
라. 3,4공화국 12
마. 5공화국 12
바. 6공화국 13
2)생활보호사업 내용 13
가.대상자 선정 13
나. 책정기준 13
다. 보호내용 13

II.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방법 16
1) 조사대상의 표집절차 16
2) 조사방법 17
3) 조사기간 20
4) 분석방법 20

2.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21
1. 사례연구 21
1) "딸린 식구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죠" 21
2)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거지 사는게 아니죠" 23
2. 조사 결과의 요약 24

3. 조사결과분석 36
1. 인구 특성 및 장애 특성 36
1. 생활보호 유형 36
2. 생활보호기간 38

3. 성별 38
4. 나이 39
5. 장애유형 39
6. 장애등급 41
7. 장애발생 시기 41
8. 장애발생 원인 43
9. 결혼여부 43
10. 가족 44
11. 출생지 45
12. 학력 46
2.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47
1. 재산소유현황 : 동산과 부동산 47
2. 가구 월평균 수입, 수입원 및 더 희망하는 월수입 47
3.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의 월지출 52
4. 저축과 부채 55
5. 주거 환경 60
6. 일상활동 62
3. 취업구조 66
1. 현재의 직업, 노동일, 직업만족, 새로운 직업 66
1) 현재의 직업과 노동일 66
2) 직업만족도와 새로운 직업 71
2. 취업의 어려움 72
3. 가구주 본인의 수입 74
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취업보완책 76
1) 장애인 직업훈련 76
2)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 78
4. 의료 81
1. 장애발생후의 치료 81
2. 의료재활서비스의 이용 83
1) 재활치료 83
2) 보장구 83
3. 병원이용정도 86

5. 장애인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89
1. 수용시설 89
2.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90
3. 특수교육제도 92
4.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94
6. 의식 95
1. 가치관·자아관 95
2. 생활수준인식 97
3.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97
4. 자녀 양육 98
5. 노후 대책 99
6. 빈곤의 원인 100
7. 빈곤극복방안 101
8.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105
9. 단체나 정당 가입 및 활동 106
10. 정치적 안정, 장애인복지, 빈곤격차에 대한 전망 108

III.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 조사에 관한 대책안

1. 서론 111
2. 본론 111
3. 결론 116

참고문헌

부록

I. 부록표 123
II. 설문지 144
III. 직업분류표 155

표 목차

<표 I-1>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비교 9
<표 I-2>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9
<표 I-3> 1994년 기준 생계보호내용 14
<표 I-4> 1994년 기준 의료보호 내용 14

<표 II-1> 각 구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 가구주 수 17
<표 II-2> 조사된 구와 각 동의 분포 18
<표 II-3> 지역별 할당표본 및 회수표본 18

<표 1-1>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성별, 보호유형별 분류 37
<표 1-2> 생활보호장애 가구주의 생활보호유형 37
<표 1-3> 장애인, 일반의 생활보호 지정기간 비교 38
<표 1-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성별 비교 39
<표 1-5>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비교 40
<표 1-6>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류 40
<표 1-7>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서울시 장애인의 장애등급 비교 41
<표 1-8>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기 비교 42
<표 1-9>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인이 된 원인 42
<표 1-10>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결혼여부 비교 43
<표 1-11> 생활보호장애인과 전국, 서울 생활보호자의 가족수 비교 44
<표 1-12> 가족중 장애인 수의 비교(본인제외) 44
<표 1-13>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출생지 45
<표 1-14>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학력 비교 46

<표 2-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재산정도 : 동산과 부동산 소유정도 48
<표 2-2>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가구 월평균 수입 비교 49
<표 2-3> 생활보호장애인의 가구원수,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가구월평균 수입 49
<표 2-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주수입원 50
<표 2-5>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수입원 51

〈표 2-6〉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의 더 원하는 수입 51
〈표 2-7〉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의 더 원하는 수입 51
〈표 2-8〉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가구와 일반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출액 비교 53
〈표 2-9〉 생활보호유형, 가구수입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 가구지출 53
〈표 2-10〉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출순위에 따른 지출내용 54
〈표 2-11〉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여부 55
〈표 2-12〉 장애유형, 나이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의 저축여부 55
〈표 2-13〉 생활보호장애인의 월평균 저축액 56
〈표 2-14〉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목적 57
〈표 2-15〉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목적 57
〈표 2-16〉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빚 유무 58
〈표 2-17〉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빚유무 58
〈표 2-1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빚 액수 59
〈표 2-19〉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가 빚진 대상 59
〈표 2-20〉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빚진 이유 59
〈표 2-21〉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빚진 이유 60
〈표 2-22〉 생활보호장애인, 일반장애인, 일반생활보호자의 주거형태 비교 61
〈표 2-23〉 생활보호장애인이 사용하는 방 수 61
〈표 2-24〉 가족수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가구의 방 수 61
〈표 2-25〉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일상활동 정도 62
〈표 2-26〉 서울시 장애인의 일상활동의 정도 63
〈표 2-27〉 서울장애인가구주의 여가시간이용방법 63
〈표 2-28〉 생활보호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교 64
〈표 2-29〉 장애유형별, 등급별 생활보호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65

〈표 3-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현재 종사하는 직업 67
〈표 3-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한달 평균 노동일 68
〈표 3-3〉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활동분야에 따른 종사상의 위치 68
〈표 3-4〉 나이, 장애유형, 교육정도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분야 69
〈표 3-5〉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활보호유형, 직업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평균노동일 70
〈표 3-6〉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직업만족여부 71

〈표 3-7〉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가 원하는 새로운 직업 72
〈표 3-8〉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가 원한는 새로운 직업 72
〈표 3-9〉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운 점 73
〈표 3-10〉 장애인 본인의 수입비교 74
〈표 3-11〉 직업, 평균노동일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본인수입 비교 75
〈표 3-12〉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직업훈련경험유무 77
〈표 3-13〉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가 받은 직업훈련의 종류 77
〈표 3-1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장고법 인식도 78
〈표 3-15〉 장고법이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에 미친 영향력 79
〈표 3-16〉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고법 영향력 인식도 79

〈표 4-1〉 생활보호장애인의 장애발생후의 치료정도 81
〈표 4-2〉 생활보호장애인이 장애발생 직후 치료를 전혀 못 받은 이유 82
〈표 4-3〉 생활보호장애인중 장애발생 직후 받은 치료의 만족도 82
〈표 4-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의료재활치료의 이용여부 83
〈표 4-5〉 서울 일반장애인가구주의 보장구소유여부 84
〈표 4-6〉 서울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사용 보장구종류 84
〈표 4-7〉 서울일반장애인가구주가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84
〈표 4-8〉 93년 서울시 보장구 지급실적 85
〈표 4-9〉 정부의 보장구지원사업에 대한 생활보호장애인의 인지여부 86
〈표 4-10〉 생활보호장애인들의 정부 지급보장구에 대한 불만족 이유 86
〈표 4-1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병원이용 정도 87
〈표 4-12〉 서울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건강상태 87

〈표 5-1〉 생활보호장애인의 수용시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90
〈표 5-2〉 생활보호장애인의 복지시설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90
〈표 5-3〉 서울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91
〈표 5-4〉 서울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복지관 서비스수혜여부 91
〈표 5-5〉 특수교육·특수학급 현황(93년) 92
〈표 5-6〉 생활보호장애인의 특수교육 인지 및 이용 여부 92
〈표 5-7〉 생활보호장애인의 세금할인 및 공공요금 할인제 인지 및 이용 여부 93
〈표 5-8〉 나이, 장애유형, 등급,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이용여부 93
〈표 6-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자아관·가치관 95
〈표 6-2〉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의 생활수준인식 비교 96
〈표 6-3〉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생활수준 인식 96
〈표 6-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생활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98
〈표 6-5〉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 98
〈표 6-6〉 생활보호대상가구주의 자녀양육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 여부 99
〈표 6-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노후대책 100
〈표 6-8〉 나이,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노후대책 ..100
〈표 6-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가 생각하는 빈곤의 원인 101
〈표 6-10〉 나이와 생활보호유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가 생각하는 빈곤의 원인 102
〈표 6-1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빈곤극복방안 103
〈표 6-1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생각하는 빈곤원인에 따른 빈곤극복 방안 104
〈표 6-13〉 생활보호 장애인 의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105
〈표 6-14〉 나이와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이후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105
〈표 6-15〉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 및 활동 여부 106
〈표 6-16〉 나이, 일상활동중 난체활동 정도, 생활보호유형, 빈곡극복 방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정당가입 및 활동 여부 107
〈표 6-17〉 이후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전망 108
〈표 6-18〉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 109
〈표 6-19〉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전망 110

부록표 목차

〈부록표 1〉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의 건강상태 124
〈부록표 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배우자 나이 124
〈부록표 3〉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장애유형 분포 124
〈부록표 4〉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배우자 학력분류 125
〈부록표 5〉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유형 125

〈부록표 6〉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재산소유현황 : 동산과 부동산 125
〈부록표 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가구수입 126
〈부록표 8〉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수입소비형태 126
〈부록표 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에 따른 빚액수 127
〈부록표 10〉 전국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소유현황 127

〈부록표 11〉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중 14세이상 가구주 취업상태 128
〈부록표 12〉 일반 장애인가구주의 현재 활동 분야 128
〈부록표 13〉 전국 일반장애인의 취업구조 129
〈부록표 14〉 나이, 장애등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움 130
〈부록표 15〉 장애유형, 직업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취업시 어려움 131
〈부록표 16〉 서울시 일반가구주의 직업훈련수혜여부 132
〈부록표 1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여부의 관계 132
〈부록표 18〉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직업훈련이용에 따른 직업유형 133
〈부록표 19〉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고용의무제 이용에 따른 직업유형 133
〈부록표 20〉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유형에 따른 고용의무제의 이용 134

〈부록표 21〉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의
치료정도와 치료만족도의 관계 134
〈부록표 22〉 서울시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의 의사치료시기 135

〈부록표 23〉 서울시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지금치료시 회복여부 135
〈부록표 24〉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유형과 치료정도의 관계 135
〈부록표 25〉 장애발생시 치료가 충분했는지의 여부 136
〈부록표 26〉 장애발생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136
〈부록표 27〉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보장구 현재 사용 여부 136
〈부록표 2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장애등급에 따른 보장구 무료교부 인지여부 137
〈부록표 29〉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본인소득과 병원이용정도의 관계 137

〈부록표 30〉 전국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현황 138
〈부록표 31〉 생활보호대상중 시설보호의 현황 139
〈부록표 32〉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 139
〈부록표 33〉 일반장애인가구주의 이용하는 서비스 내용 139
〈부록표 3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주거형태, 직업, 가구 월평균수입에 따른 생활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140

〈부록표 35〉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 의사에 따른 장애인복지에 대한 견해 141
〈부록표 36〉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의사에 따른 정치적 안정에 대한 견해 141
〈부록표 37〉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단체나 정당가입의사에 따른 빈부격차에 대한 견해 142
〈부록표 3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빈곤극복,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과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의 관계 143

I. 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

1. 서론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물론 현재 우리사회에서 기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도 빈곤의 문제가 계속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빈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우리나라의 빈곤문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장애인의 빈곤이 어느정도이며 그것이 일반적인 빈곤문제로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고찰한 것이다. 우선 현대사회에서의 빈곤의 개념과 원인, 형성과정 및 실태와 장애인의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를 통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규명하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은 빈곤문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2. 빈곤의 개념

빈곤의 정의는 흔히 절대적 빈곤개념과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대별된다. 절대적 빈곤은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이 결핍한 상태'를 말하고, 상대적 빈곤은 '소득의 불평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 취업, 사회적 이동 등 계급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이 일반적인 빈곤의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상대적 빈곤이 빈곤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빈곤개념과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최저생계비, 즉 공식빈곤선을 제시하고 있다.

1988년 정부기관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1]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88년도 최저생계비는 315,076원이었으며, 또한 88년 최저생계비에 88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89년 예상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89년도, 90년도 최저생계비는 각각 337,446원, 359,717원이었다. 한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에서는 1994년 최저생계비를 가장 40세, 부인 37세, 아들

1)최제생계비 계측조사연구, 1989.1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는 1989년 최저생계비에 대한 조사연구 이후 94년 올해 다시 진행하고 있다.

13세, 딸 11세인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1,634,507원으로 발표했다.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정부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예산규모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최저생계비 산출에 있어 정부와 노동자단체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부의 것으로 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90년 추정 359,717)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전체인구의 10%수준인데 반하여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체인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3.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빈곤에 관한 현상론적 관점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빈곤을 현상론적으로 보는 이론은 기능주의, 갈등론,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빈곤문화론이 있고, 사회구조적 관점은 주변부자본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있다.

다음은 각각의 빈곤에 대한 관점이다.

1) 빈곤에 관한 현상론적 관점

가.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시각은 한 사회를 모든 부분들이 전체의 기능에 기여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하는데, 각각의 부분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분들의 행위를 지도하고 일탈자를 처벌하는 교정기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층에 거의 소용이 없는 과업을 수행하거나 전혀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되며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적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사회체계가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지 못해 대량의 빈곤층이 존재할 때, 또는 체계안의 불공평성 때문에 중요한 과업들의 수행이 극소수의 상향이동으로만 존재할 때 빈곤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의 또 다른 시각은 빈곤층이 실제로 사회의 중요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붕괴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불쾌한 일에 종사하는 것, 그들의 활동으로 부유층을 보

조하는 것, 사회사업가와 같은 직업을 만들어주는 것, 타인들이 사지 않는 낮은 질의 상품을 구매하는것, 타인들이 자선을 베풀 기회를 부여하는 것, 부유층이 종종 채택하는 문화형태(재즈, 블루스 등)를 창출하는 것, 기술진보에 의한 대량실업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변동의 비용을 흡수하는 것 등의 이로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에 대한 위의 두가지 관점은 결국 사회의 기능 영위와 존속을 위해 계층체계 및 빈곤의 기능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빈곤을 기능상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시킴으로서 체제를 옹호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전화되기 쉽다.

나.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은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의 경제체계와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지만 빈곤을 필수적이거나 이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집단들이 더 많은 사회적·물질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은 이러한 보상들로부터 박탈당한다는 이유로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가용자원들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 집단이 덜 가질 때에만 더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빈곤의 존재로부터 이익을 보는 권력집단들에 의해 착취당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갈등론의 시각에 따르면 일정한 집단들이 현존하는 자원분배의 불공정·부당성 때문에 이에 관해 어떤 것이 행해질 수 있고 행해져야 한다고 느낄 때, 빈곤은 하나의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나 갈등론에서의 갈등은 역할체계의 거부로가 아니라 역할 수행의 한 차원으로 나타나며, 모든 사회에 편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한다. 즉, 역할구조에는 기능주의자들이 지적하듯이 규범적 통합으로 이끄는 면이 있는 한편, 권력관계의 구조적 대립때문에 갈등으로 표출되는 면도 있다는 역할의 이중성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기능주의와 내용상 다를 것이 없으며 단지 역할의 해석에서만 갈라질 뿐이다.

다. 상호작용론적 관점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빈곤의 문제를 주관적 성격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즉, 중요한 쟁점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빈곤이 제기될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삼국시대의 중류층보다도 방글라데시의 중류층보다도 대한민국의 빈민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비교하는 것은 부유한 대한민국사람이다. 결국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한 그들은 여전

히 스스로를 빈곤층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작용론자들은 빈곤 문제를 기본적으로 의식이라는 일차원적 분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순 개념은 찾아 볼 수 없고 정태적인 문화현상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 문화론적 관점

문화론적 관점은 빈민의 삶의 양식에 촛점을 두며 빈민층의 태도와 가치유형이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다르거나 또는 일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빈곤문화의 특징은 개인적 결함과 일탈적 성격으로 인하여 주문화(Main Culture)에 통합되지 못하게 하며 세대를 통해 전승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빈곤의 원인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이 상호중복되거나 상호작용하여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곤문화론적 접근에서는 그 인과관계의 선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2) 빈곤에 관한 사회구조적 관점

가. 주변부 자본주의론

① 도시 비공식부문론

대규모 산업화가 투자자본을 창출하고 산업이 팽창하면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구가 증가하고 그 파생효과로 사회전체에 걸쳐 자원과 임금재분배가 달성될 것이라는 근대화론의 가속적 성장모델이 실제로는 제3세계에서 도시인구의 빈곤과 실업이 만연해지자 ILO(국제노동기구)가 이 이론을 비판하며 내온 것이다. 즉 도시경제에 최초로 편입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러면서도 공식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고용기회를 '비공식적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비공식 부문은 노동력의 흡수가 전체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원할하지 못할 때, 증가하고 있는 이농민들에게 고용 및 소득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역동적인 부문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도시비공식부문론은 개념의 불명확성과 공식·비공식이라는 이원론의 한계가 있다.

② 주변화론

주변화론은 종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로서 대부분의 이농민들이 자본집약적 산업화로 인해 근대적 공업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적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인식한다.

대도시에 사는 과잉인구의 대부분이 주변적 부분을 이루게 되는데 독점부문에 침식당한 수공업자·소규모 사업가·가게 주인·소규모회사의 경영자와 농업부문에서 추방당해 독점적 부문에 취업하지 못한 이농민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주변화론은 주변적 경제활동과 독점부문의 경제활동의 관계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직접적 지배·예속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주로 주변적 경제부문이 시장이나 원료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독점부문에 우선권을 빼앗긴다는 의미에서 간접적 지배·예속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③ 생산양식 접합론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그리고 중심부문과 주변부문간의 이분법이 안고 있는 도시 비공식부문론과 주변화론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생산양식 접합론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제3세계에 잔존하고 있는 소상품 생산양식들이 상호작용하여 변용되는 즉, 생산양식들의 접합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경제는 한편으로 국제 경제에 깊이 통합된 자본주의 부문에 존재하고 이 바깥에 다양한 생산관계를 가진 소상품 생산부문이 자본주의 부문에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생산양식 접합론은 소상품 생산자에게만 치중하여 소상품생산자에게 고용된 도시빈민들, 그리고 도시빈민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으나 독점부문과 직접적 연결관계가 없는 노점상·행상등의 주변적 상업행위와 영세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상대적 과잉인구론적 관점)

이들 연구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보편적 맥락, 즉 자본과 노동관계의 맞물림과 계급의 양극화 속에서 도시빈민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도시비공식부문론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포괄적인 비판을 가하고 대안으로 상대적과잉인구가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산업예비군으로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궁핍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상대적 과잉인구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도시빈민의 창출 및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첫째, 이농에 의한 잠재적 과잉인구의 현재화, 둘째, 현역노동자의 고령화·폐질화를 포함한 유동적 과잉인구의 하강운동, 세째, 부르죠아의 분해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도시빈민은 상대적 과잉인구로

존재하며 한국사회의 계급적 양극분해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내의 부단한 하강이동으로 형성되며, 도시빈민이 독자적 계급을 형성한다기보다는 노동하는 빈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에서는 도시빈민이라는 독자적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본축적과정 자체가 상대적 과잉인구로서의 실업자(산업예비군), 불완전 및 불안정 취업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피구휼민 등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4. 도시빈민의 형성과정과 실태

1) 도시빈민의 형성과정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의 형성은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즉 1960년대부터 본격 추진된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독점자본의 극대이윤 추구,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대외 종속적 공업화의 추진은 농업을 비롯한 국내의 다른 산업을 몰락시키고 수출관련 일부 독과점 산업만을 기형적으로 비대화 시켰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저농산물 정책, 영세소농 경영, 소작제도 재생, 부재지주 증가, 부채급증, 외국 농축산물 대량 수입 등으로 농업을 피폐화시키고, 농민의 소농으로의 전락과 이농을 촉진하게 된다.

이렇게 농촌의 몰락과 함께 도시로 이주한 이농민들은 자본이 없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특별한 기술도 없기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산업의 독점적 구조와 이에 따른 극히 제한된 고용구조로 대기업에 고용되지 못하고 실업자로 존재하거나 영세업체와 영세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도시 비공식적이고 주변적인 부문에 불완전 취업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농민들은 도시 변두리의 무허가 불량주택 지역에 기거하게 된다.

한편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산업노동자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최저생활유지도 곤란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높은 노동강도와 산업재해에 의해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도시내에서 불구, 폐질, 노령 등의 요인으로 부양 능력자가 없거나, 가구주의 사업 실패와 장기적 실직 등으로 빚을 지거나 가세가 기울어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빈민은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을 가진다. 즉, 이농층이 서서히 바닥나면서 이제는 도시빈곤층이 이농민에서 충원될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노동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노동능력이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이나 막노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상업

등 자영업의 실패,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돼 빈곤층으로 내려 앉게 되는 것이다.

도시빈민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창출되고 재생산된다. 도시빈민은 '이농'을 매개로 노동자계급과 하나의 순환계열을 이루면서 자본-임노동 관계의 한 극을 점하게 된다. 자본축적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레타리아화 과정속에서 도시빈민은 현역노동자 계급과 결합되어 있고, 그들의 빈곤상태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빈곤문제와 접맥되어 있다. 즉 도시빈민은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산업예비군의 기능을 하면서 프로레타라아라는 보다 포괄적인 동일계급범주상에 위치하고 전형적인 노동자 계급과 가족단위로 결합하여 노동력 재생산 과정속에서 함께 재생산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존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도시빈민의 실태

도시빈민을 실태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를 인용·정리하였으며, 빈곤의 실태를 보다 잘 알 수 있는 소득, 직업, 저축과 부채, 연령, 가구원 특성을 대표적으로 실었다.

가. 소득

1990년 현대사회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같은해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884,200원이었는데 빈곤층의 93.6%가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47.5%가 절반수준인 40만원대 이하의 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는 81년의 빈곤층 월평균 소득이 153,130원으로 일반의 54%였으며, 85년에는 빈곤층 월평균 소득이 431,183원으로 일반의 70.80%였던 것에 비해 상대적 빈곤은 더욱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나. 직업

도시빈민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영세자영업이 가장 많으며, 생산기능직·사무직과 같은 안정적 직업은 극히 적고, 실업상태도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도시빈민의 자녀들도 영세 서비스업이나 영세제조업,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저축과 부채

89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서울시 저소득층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연구'

에 의하면 전체 28.4%만이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저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집마련(49.4%)이었다. 저축이 빈곤층에게 있어서 주요 지출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빚이 있는 가구는 44.2%였으며, 빚을 진 이유는 생활비 마련과 의료비용 마련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빚이 있는 가구보다 빚이 없는 가구가 더 많지만 빚의 원인이 생활비와 의료비마련에 집중된 것은 빈곤의 심화과정을 알 수 있다.

라. 나이

빈곤가구주의 나이는 계속 고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70년대 서울시 거주 빈민가구주의 나이분포는 40-49세가 28.1%, 50-59세가 19.7%, 60세 이상이 8.4%인데 반하여 1989년 조사에 의하면 40-49세가 25.8%, 50-59세가 23.8%, 60세 이상이 13.1%로 증가하였다.

3) 가구원 특성

빈곤층의 수입이 불충분하게 이루어 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구원 중의 한 사람이 만성 질환등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인, 폐질자인데 있다. 93년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을 보면 전체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주 559,504명중 장애인과 폐질자는 140,521명으로 25.1%을 차지하고 있다.

5. 경제생활 및 취업실태를 통해 본 장애인의 빈곤

앞에서 도시빈민의 형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 결과물임을 살펴보았다. 장애인 역시 자본주의 사회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규정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빈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장애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이후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하고, 장애인의 빈곤실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보사부에서 발표한 '93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민 4천4백5만6천명중 약 4.5%인 2천2백1십1명(가구주 559,504명)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 중 생활보호대상장애인은 약 7.2%인 122,590명이며 이중 가구주는 약 10.8%인 60,681명이다. 이는 보사부 발표대로 장애인구를 1백만으로 하면 장애인구의 약 10%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일단 정부의 생활보호사업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생보자의 수에 근거해서만이 아니라 장애가구의

〈표 I-1〉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비교

(단위 : 누적 비율 %)

분류	'90 전체 장애가구 (1)	'90 전체 비장애 (2)	'90 서울 장애가구 (3)	'90 서울 일반 가구 (4)	'94서울 장애가구 (5)
10만원 미만			9.0	1.4	13.9
10-20만원미만	20.9	4.9	15.8	3.1	33.6
20-30만원	33.1	10.0	26.9	6.9	51.4
30-40만원	46.7	18.1	39.5	14.1	75.0
40-50만원	57.2	28.2	48.5	22.6	88.5
50-60만원	68.9	43.1	62.1	36.0	91.9
60-70만원	76.9	55.7	69.9	47.3	98.2
70-100만원	88.5	76.1	83.2	68.6	
100-150만원	96.0	91.7	93.5	87.4	
150-200만원	100.0	100.9	96.8	94.0	
200-300만원			98.6	97.5	
300이상			99.4	99.2	

자료: (1), (2) 보건사회연구원, '90년 장애인 실태조사', 1992.
(3), (4) 보건사회연구원, '9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중 서울지역자료에서 가구주만을 별도로 분석함.
(5) 서울지역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관한 본 조사, 1994.

〈표 I-2〉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천명)

	총계	15세이상(생산가능연령)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율)	소계		
'90 전체인구[1]	42,869 (100%)	18,036	451(2.4%)	18,487 (43.1%)	12,314 (28.7%)	30,801 (71.8%)
'90 장애인구[2]	956 (100%)	293	142(32.7%)	435 (45.6%)	444 (46.5%)	880 (92.1%)

자료: 1. 통계청(1990).
2. 노동부(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의 자료 재구성).

의 수입 평균을 살펴보면 <표 I-1>에서 보듯이 전체가구의 수입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담보해 주고 있는 것은 취업이다. 여기서 장애당사자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표 I- 2>와 같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의 실업률(32.7%)은 전체인구의 실업률(2.4%)에 비해 상당히 높다. 취업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이 실업률을 통해 능력이나 장애의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를 이유로 취업이 되지 않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중증의 장애뿐 아니라 경증장애의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2].

둘째, 취업이 된 경우에는 낮은 지위와 저임금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장애인을 산업별로 보면 점차로 쇠퇴하고 있는 1차산업의 종사자가 전체의 33.1%에 해당된다. 전체인구의 경우에는 18%만이 종사하며 그나마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고 하겠다. 직업에서는 전문직과 사무직에는 거의 종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낮은 교육수준 등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서의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인 이상의 비교적 안정되고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 경우가 장애인 전체노동자 중 9.0%에 불과하다. 전체인구의 노동자중에서는 17%가 이에 종사한다. 서울시(90년)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장애인중 혼자 일하는 자영업(영세자영) 35.9%를 별도로 하고, 10명이하의 사업장이 39.7%, 11명에서 99명까지의 사업장이 15.3%였으며, 100명이상 사업장은 4.2%에 불과했다. 이렇게 산업, 직업,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는 장애인들의 낮은 취업위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장애인 가구주가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생활비 보조가 33.2%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역시 생활비 보조가 25.4% 로 높았다. 또한 사회나 국가가

2) 전체 장애인중 약 20%에 이르는 이들이 장애가 심하여 취업할 수 없다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는가에 따라 이들의 노동가능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불구'를 이유로 노동할 수 없다는 이가 169,000명이었다. 그러나 이 수가 절대불변의 것은 아니다. 사회환경의 변화가 장애를 예방,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최저 생계비 보장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보장도 15.1%로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 장애인의 현실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빈곤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장애인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3]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보장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은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불철저하게 수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빈곤을 '장애와 빈곤'이 결합된 이중적인 억압이라고 한다. 즉 일반 도시빈민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소외, 박탈감과 함께 장애인으로서 평소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중복되어 더욱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에서 빈민장애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살아온 기간이 유난히 길거나, 일반 장애인 가구에 비해 가족 중 장애인 수가 더 많고 취업 또한 더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일반적인 빈곤문제나 장애인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안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6. 생활보호사업의 변천과정 및 내용

1) 생활보호사업의 변천과정

가. 조선구호령 공포·실시

제1차 세계대전후의 경제불황은 일본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일본은 자국 국민대중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1929년 구호법(救護法)을 제정하여, 193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시행된 구호법은 조선에서 1944년 3월1일 조선구호령으로 공포·실시되었다. 조선구호령은 원칙적으로 ①65세 이상 노쇠자, ②13세 이하의 아동, ③임산부, ④불구·폐질·질병·상병·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에 의해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호의 종류에는 생활부조, 의료·조산·생업부조가 있으며,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에 수용을 위탁하였다.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 공적부조의 지침 구실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이경미,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1993,한양대 사회학 석사학위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편견, 통계적 차별, 독점적 차별로 설명하고 있다.

나. 미군정기

미군정기의 생활보호사업은 이재민, 월남동포, 빈궁자, 고아 등에 대한 기아 방지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또는 응급주택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었으나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제1공화국과 6.25

정부수립후에는 사회혼란과 재정악화로 이렇다 할 구호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1950년 한국전쟁은 수만명의 요구호자를 만들어 냈으나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응급구호에 치중했으며, 노약자, 유아,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구호하였고, 이는 주로 외국인 원조단체들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휴전후에 항구적인 난민정착사업에 의하여 조선구호령에 해당되는 자 또는 일시적인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한하여 구호를 실시하였다.

라. 3,4공화국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더기로 사회복지관련법을 제정하게 된다.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빈민구호정책을 실시를 기대했으나 재정사정에 의하여 부분적인 생활보호만 실시하였다.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한국전쟁 전후의 무연고자 중심의 구호사업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사업의 원칙을 세운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였으며,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녀에 대한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을 실시했다.

마.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의한 5공화국은 국정지표의 하나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다. 이는 우선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 생계구호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능력의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2월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최저생계보장

② 직업훈련지원확대와 직업훈련기간 동안 그 가족의 생계비 지원

③ 대도시의 인구분산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세민 지방이주 지원 사업 실시

④ 자활지원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사업 실시

⑤ 생활보호사업위원회의 조직과 기능강화를 위한 생활보호체계의 인력보강으로 일선행정기관에 복지요원을 두도록 생활보호관리체계 개선

1982년 12월 31일에는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생계보호와 자활지원까지 규정했으며,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1982년 12월 31일)하여 자활보호의 일부로 규정하고,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을 폐지(1983년 12월 30일)하고 교육보호로 규정하였다.

바. 6공화국

6공화국의 생활보호정책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를 시작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보호제도와 추정소득제를 도입하였다.

2)생활보호사업 내용

가. 대상자 선정[4]

① 거택보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 노약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및 50세 이상의 부녀자로서만 구성된 세대

② 자활보호자 : 세대내 근로능력자는 있느나 실업, 생활수단의 상실,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③ 시설보호 : 주거지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보호를 행하는 자

나. 책정기준[5]

① 거택보호 : 소득(인/월) : 16만원 이하, 재산(가구) 1.700만원 이하

② 자활보호 : 소득(인/월) : 17만원 이하, 재산(가구) 2.000만원 이하

4)94년 현재
5)94년 현재

다. 보호내용

①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시설보호자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수요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 I-3>과 같다.

<표 I-3> 1994년 기준 생계보호내용

	양 곡	부 식 비	연 료 비	피복비	장 의 비
거택	백미(인/월)-10Kg 정맥(인/월)-2.5Kg	(인/월)-820원	(가구/월)-675원	없음	(인)-300,000
시설	백미(인/월)-456g 정맥(인/월)-114g	(인/월)-820원	(인/월)-50원	(인/년)-49,790	(구당)300,000원

②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로서 보호종류별로 본인부담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4>와 같다.

<표 I-4> 1994년 기준 의료보호 내용

	외 래	입 원
거택	전액 무료	전액무료
자활	1회 이용시 1,000원	일부본인부담 - 20%

③ 교육보호

교육보호는 취학적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 주는 보호이다. 보호내용은 중학생 및 실업고등학교 전학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이다.

④ 생업자금융자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소규모의 자금으로 가능한 자영업을 권장하며 자립을 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최고 700만원(담보 15.0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다.

⑤ 취로사업

1977년부터 시작된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취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로노임은 1994년 현재 14.000원이다.

II.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빈민장애인 특히 도시빈민장애인은 일반적인 도시빈민의 왜곡된 삶에 장애인이라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더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본 조사는 빈민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6]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민장애인의 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국가에서 약간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보장수준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본 조사의 목적은 서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삶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거주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인구 특성과 장애 특성을 파악하여 이러한 특성이 빈민 일반, 장애인 일반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 경제적 삶의 실태를 다른 빈민, 장애인의 삶과 비교하여 빈곤의 심각성을 밝힌다.

3. 서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삶 제반에 관한 의식을 파악한다.

2.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의 표집절차

6) 실제로 빈민장애인 중 생활보호자로 지정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한 것은 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를 가구주로 한정시킨 것은 가구주가 장애인이었을 때 그 가구 전체가 더 빈곤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의 비율이 가구원들 중에서보다 가구주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도 설명될 수 있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주를 모집단으로하여 실시되었다. 94년 서울시[7]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는 총 4만4천988명으로 거택보호 1만1천770명, 자활보호 3만3천218명이다. 이중 장애인 가구주는 서울 전체 생활보호자의 14.8%인 6천676명(거택 1천514명, 자활 5천162명)으로 각 구별 분포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각 구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 가구주 수(94년 현재)

단위 : 명

	합	거택	자활		합	거택	자활
종로	91	44	47	마포	467	68	399
중구	81	35	46	양천	90	36	54
용산	121	48	73	강서	500	94	406
성동	603	82	521	구로	271	57	214
동대문	171	57	114	영등포	149	55	94
중랑	225	69	156	동작	265	59	206
성북	227	70	157	관악	252	74	178
도봉	549	89	460	서초	63	21	42
노원	1598	252	1346	강남	444	101	343
은평	146	73	73	송파	128	43	85
서대문	80	28	52	강동	155	59	96
합 6,679		거택 1,514		자활 5,162			

본 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는 모집단의 3%선인 200명 정도가 최종 집계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본은 서울의 각 구를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한 뒤 각 지역에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한 몇 개의 동을 임의 추출하여 각 동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명단을 확보한 후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표집하였다. 생활보호 유형별, 성별, 장애유형별로 별도의 비례할당은 하지 않았다. 각 지역별로 할당된 표본 수는 회수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각지역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 수의 3-4%선으로 정하였다. 조사된 구와 동, 그리고 회수된 표본은 <표 II-2>와 <표 II-3>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2) 조사방법

가. 면접조사 : 조사원이 개별대상자와 1 : 1의 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인 면

7) 서울시 사회과 생활보호계, 1994

〈표 II-2〉 조사된 구와 각 동의 분포

단위 : 사례(%)

	구	동	사례수
중앙	성동구	행당2동, 군자동, 금호동 4가, 성수2가 1동, 성수2가4동 마장동, 옥수2동, 용답동, 자양3동, 중곡3동	31(14.9)
북부	성북구	정릉1동, 정릉3동, 길음1동, 길음2동	11(5.3)
	노원구	월계2동, 중계1동, 중계3동	26(12.5)
	도봉구	미아2동, 번3동	35(16.8)
	중랑구	면목4동, 상봉1동	14(5.3)
서부	서대문구	남가좌2동, 홍은동, 홍은 2동	15(7.2)
	마포구	공덕2동	3(1.4)
	강서구	가양2동, 가양3동	17(8.2)
남부	관악구	봉천본동, 봉천동,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신림동, 신림1동, 신림2동, 신림6동, 신림7동	22(10.6)
	동작구	노량진본동, 노량진2동, 상도동, 상도1동, 상도4동	6(2.9)
	강남구	수서동 일원1동	17(8.2)
동부	강동구	길1동, 천호2동, 천호3동	11(5.3)
		미상지역	3(1.4)

주 : 각 지역에서 표집되지 않은 구는 중앙지역의 4개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북부지역의 1개구(은평구), 서부지역의 2개구(양천구, 구로구), 남부지역의 2개구(영등포구, 서초구), 동부지역의 1개구(송파구)이다.

〈표 II-3〉 지역별 할당표본 및 회수표본

지역	전체 생활보호자 가구주	장애인 생활보호자 가구주	할당된 표본수	회수된 표본수
중앙	6380	1067	32 - 42	31
북부	16832	2745	82 -109	83
서부	9623	1408	42 - 56	35
남부	10194	1173	35 - 47	45
동부	1813	265	8 - 11	11

주 : 회수표본은 지역미상 3사례를 합하여 총 208사례이다.

접조사를 본 연구의 주요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나. 우편조사 : 조사과정에서 면접조사가 불가능했던 2개동(회수 25사례)의 경우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기존자료의 활용

① 기존 통계자료 보고서의 이용

기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울시의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1990),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울시 장애인 복지수요 실태조사 보고서'(1992)와 전국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보고'(1991)를 활용하여 본 조사와 비교, 연구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는 보사부의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1993)을 이용하였다.

각 자료의 조사대상,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 '서울시 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이하 서울시 조사) : 1989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서울에 있는 등록장애인 중 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컴퓨터에 입력된 이들 중에서 표본추출하여 이루어진 조사이다. 선정방법은 지역별로 층화표집하고 장애유형별로 비례할당하는 것으로 1,050명을 실제 조사하였다.

ii) '서울시 장애인 복지수요 실태조사보고서' (이하 남부복지관 조사) :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992년 조사된 것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이상 등록장애인(장애유형을 먼저 분류한 후 무작위 추출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미만 장애인의 부모(한국장애인부모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서울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회수된 표본수는 장애인 497명, 장애인부모 140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67명이었다.

iii) '1990 장애인실태조사보고' (이하 '90 전국조사) : 199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국 규모(252개 조사구의 5만가구에 대한 조사실시)의 장애인 조사이다. 이 조사에서 전국 재가장애인 출현율을 22.32(인구천명당)명이라고 발표하였다.

iv) '93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이하 생활보호자현황분석) : 보사부에서 92년

조사한 것으로 생활보호대상 전 가구및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② 1차자료의 이용

보건사회연구원의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raw data중 서울시 조사 데이터만을 따로 분석(이하 보사연 서울자료)하여 서울시 장애인 가구주 전체의 생활상태와 본 조사의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가구주의 생활상태를 비교하였다. 보사연(서울) 조사는 서울시 전체 가구주 10,763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데 그 중 장애인 가구주는 398사례이다. 본 조사와의 비교 과정에서 그 동안의 사회, 경제적 수치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각 변수들은 본 연구에 맞추어 재범주화하였다.

덧붙여 보사연 자료의 경우 전국조사로 진행이 되었고, 지역별 표본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지역만을 별도로 이용할 경우 모수치를 추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장애인의 수적 분포의 부분이 아닌 장애인 가구주의 특성 분석에만 비교 이용하였음을 밝힌다.

라. 사례연구

면접조사 결과의 수치제시만으로는 빈민장애인의 생생한 실태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접조사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가구주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 두 사례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3) 조사기간

1차조사 : 1994년 1월 14일 - 2월 13일
2차조사 : 1994년 3월 14일 - 4월 13일
사례연구: 1994년 4월 26일, 28일

4) 분석방법

조사된 결과는 SPSS 통계처리방법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2.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본 장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의 실태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의 대상자중 2명의 삶을 기술하였고, 설문지를 통한 208사례의 면접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1. 사례연구

사례연구의 대상은 면접조사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 빈민장애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조사대상자 2명과의 추후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즉 빈민장애인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1) "딸린 식구가 있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죠"

이름 : 김경수(가명)
장애 : 지체 1급1호
나이 : 만 33세
학력 : 무학
직업 : 악세사리 제조업
결혼여부 : 기혼
가족 : 부인(비장애인, 31세) 아들(8세), 딸(2세)
거주지 : 성동구 금호동

김경수씨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것은 두 살 때이다. 전남 장흥이 고향으로 그의 나이 열 세살 때 가족들이 모두 서울로 오게돼 그도 같이 서울 땅에 발을 디디게 됐다.

서울로 올라온 그가 처음 한 일은 과일 봉투를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종일 방에서 봉투를 만들어 그때 돈으로 하루 오백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구슬목걸이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 보고, 자수도 놓는 등 돈이 될만한 가내수공업을 닥치는 대로 말아 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삼육재활원에 들어가 다리 수술을 받기도 했는데 수술은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양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음을 옮겨놓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장애가 심했고 배운 게 없었던 그는 성인이 됐지만 여타 장애인들이 그렇

듯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운 기술이 악세사리를 조립하는 일이었다. 이년여 동안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악세사리 조립과 땜 기술을 익혔다. 그런다음 따로 독립해 방을 얻어 하청일을 맡아했다.

악세사리일은 산소용접기와 책상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일감만 꾸준히 있으면 생활은 되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일감이 일정치 않아 그는 많은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악세사리 일을 하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모두 투여하고, 일주일에 세 번은 밤을 꼬박 세서 일을 하는 등 억척을 부렸지만 수중에 떨어지는 수입은 늘 보잘 것 없었다. 그래도 그는 한때는 사람을 두고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 못해 결국 혼자서 일을 해야했다.

악세사리업에 종사하면서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1987년 결혼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악세사리 일로는 도저히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그는 종로3가에서 노점 장사를 시작했다. 양말장사를 했는데 겨울이 되면서 장애를 가진 다리가 어는 등 추위때문에 도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 결국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는 노점상을 그만두고 다시 악세사리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생활보호대상자(2급 자활보호)로 지정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그는 거택보호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아내가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고 동사무소 담당자가 난색을 표명해 좌절됐다.

그는 지금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다. 1년전에 떼를 써 생업자금융자 7백만원을 받아 마련한 방이다. 예전에 보증금 1백5십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방에서 살았던 걸 감안하면 그나마 살림이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현재 김경수씨에게 가장 버거운 짐은 뭐니뭐니해도 월세이다. 그리고 사실상 벌어는 돈을 까먹고 있는 요즘, 생활의 안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나이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판당 몇원씩 받는 악세사리 땜일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올해만 해도 벌써 삼개월째 일감이 없어 놀고 있는 형편이다.

" 하루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내게 딸린 식구가 셋이나 되니 내일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김경수씨는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한숨을 내쉰다

2)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거지 사는게 아니죠"

이름 : 장성일(가명)
장애 : 지체 시각 중복 1급
나이 : 만 54세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직업 : 무직
결혼여부 : 이혼
가족관계 : 아들 두명(각각 20살, 17살), 노모
거주지 : 일원동 영구임대아파트

장성일씨는 92년 초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됐다. 당시 그는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상대편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리가 차 바퀴에 깔렸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한쪽 눈까지 실명해 그는 지금 지체와 시각의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성일씨가 생활보호대상자(2급 자활보호)로 지정된 것은 사고를 당하고나서 얼마후이다. 그는 마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선정돼 92년 말 지금 살고 있는 일원동 14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오게 됐다. 그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을 대단한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록 예전에 살던 방에서 빼온 전세금 1천만원을 까먹으며 살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나가라는 소리는 없으니까 편하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장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그전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다쳐 장애인이 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왔다. 그는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버텼지만 그가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아내는 법원에서 이혼 허가서를 받아내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렸다. 그 게 작년 5월이다. 그때부터 그는 심한 무력감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 무력감은 집 나간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가 장애인 보기를 흡사 벌레같이 본다는 극단적인 원망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그는 취직을 하기 위해 신문이나 생활정보지를 보고 다녀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당하기 일쑤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복덕방에서 조차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안된다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커다란 벽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단다.

그가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2백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합쳐 많을 때는 한달에 14만원을 내야 한다. 이 임대료 부담이 장씨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장애로 인해 일을 나갈 수 없고 이제 스무살이 된 큰아들은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 그나마 수입은 74살 노모가 하우스 일을 나가 벌어 오는 하루 오천원의 수입이 고작인데 이나마 일이 일정치 않아 돈 들어갈 구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앞으로 살게 까마득 한 건 매우 당연하다. 소망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자영업을 하는 거지만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그가 더 잘 알고 있다. 형편이 이러함에도 장씨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생활보호대상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취로사업을 동사무소에서 그가 장애인이라고 시켜주지 않아도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임대비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지도 못해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건 사는게 아니죠." 장성일씨의 탄식이다.

2. 조사결과의 요약

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인구 특성 및 장애 특성

1) 생활보호유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생활보호 유형은 자활보호(2종)가 대상자의 63.8%, 거택보호(1종)가 29.8%, 무응답이 6.2%로 나타났다. 이는 93년 보사부에서 집계한 장애인 생활보호자 가구주 중 거택보호 30.7%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94년 서울시 자료에서의 22.7%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생활보호기간

일반생활보호자의 경우 3년미만이 41.4%, 5년이상이 32.2%인데 반해 장애인은 3년미만이 32.3%, 5년이상이 52.4%를 차지해 생활보호 지정기간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길게 나타났다.

3) 성별

본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응답자 중 남자가 80.4%, 여자가 19.6%로 구성되어 있

어, 실제 94년 서울시 집계 비율(남 69.3%, 여 30.7%)보다 남성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일반 생활보호자(남 42.1%, 여 57.9%)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쉽게 빈곤에 내몰리는데 반해서 장애인의 경우는 성별과 상관없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나이

나이는 40대가 34.6%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50대 26.0%, 30대 25.0%, 60대 7.7%, 70대 3.4%, 20대 2.9%, 무응답 0.5%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나이는 30대에서 50대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60세이상의 비율은 11.6%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장애인 가구주 35.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장애인 가구주나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령 구성과는 달리 노년층중 생활보호자가 적은 것은 노년층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중년 이후의 장애 발생으로 장애로 인한 빈곤에 오랜시간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5) 장애유형

서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는 지체장애인이 7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이 10.1%, 시각장애인이 5.8%였으며 기타장애 11.2%였다.

6)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중증에 속하는 1, 2급 장애인이 각각 13.9%, 31.3%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3급 20.7%, 4급 21.0%, 5급 11.1%, 6급 1.0%, 기타 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파악의 장애등급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보호자 지정이 장애등급의 경중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장애발생 시기

본 조사에서는 41.4%가 만6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이 된 이후의 장애발생은 48.1%였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일반 장애인 가구주보다 장애발생시기가 더 어렸을 때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려서 장애를 입을

경우, 즉 장애의 지속기간이 길 경우 더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장애발생 원인

장애발생의 원인으로는 '감염 및 유행성 질환'이 21.2%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상이 12.0%로 나타났으며 최근 늘어나는 있는 교통사고, 산업재해도 각각 11.1%, 9.1%를 차지했다.

9) 결혼여부

조사대상자의 69.7%는 기혼 또는 동거의 형태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13.0%는 배우자와 별거나 사별, 10.1%는 미혼, 6.3%는 이혼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보다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이혼율은 매우 높았다.

10) 가족

서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평균 가구원수는 가구주 본인을 포함하여 거택보호자의 경우 2.69명, 자활은 4.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일반생활보호자의 평균가구원수인 거택 1.84명, 자활 3.69명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다. 또한 가족중 가구주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이 있는 사람은 1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9%, 2명 2.4%, 3명이 0.5%로 응답해서 약 1/3 가량의 장애인 생활보호자 가구에 2명 이상의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장애인 가구주 가구중에서는 12.3%가 가족중 다른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 출생지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는 서울이 18.3%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전의 지역은 공업화 초기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전라도와 충청도 등이 높게 나타나 서울의 일반 빈민 가구와 특성을 같이 한다.

12) 학력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주구의 최종학력 분포는 국졸이 29.3%, 중졸이 19.7%, 무학이 13.0%, 국교중퇴 9.6%, 중학교 중퇴가 4.3%으로 조사되어 중졸이하가 7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졸이하가 56.7%인 보사연 서울 자료에서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특히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의 경우는 3.8%, 11.3%로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

1) 재산소유현황 : 동산과 부동산

동산, 부동산 모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3.6%를 차지해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57.5%에 이르고, 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27.9%로 나타나,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토지나 집 등의 부동산보다는 저가의 동산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가구 월평균 수입, 수입원 및 더 희망하는 월수입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31-40만원이 23.6%로 가장 높았고 10-20만원이 19.7%, 21-30만원이 17.8%, 10만원 미만이 13.9%으로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75.0%나 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주 수입원은 세대주의 정기소득(임금 등)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정기수입이 23.1%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증증생활보호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월2만원의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의 경우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월6만5천원) 등의 생계수당이 13.9%를 차지했다. 이밖에 '자녀의 정기소득'이 7.2%, '형제, 친척의 도움'이 6.7%, 종교단체등 각종단체의 후원금 1.9%, 무응답 1.4% 등의 순으로 대답했고 이웃, 친구의 도움(0.5%), 연금(0.5%) 등의 응답도 있었다. 특히 거택보호의 경우 42.2%가 생계수당을 주 수입원이라고 밝혀 생계수당이 생활의 보조수당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지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3)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월지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0만원-20만원미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1-30만원이 18.8%, 10만원미만이 13.0%로 나타나 전체의 50% 이상이 30만원미만의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응답됐다. 특히 거택보호의 경우 68.8%가 월 20만원미만의 지출을 하고 있어 최소한의 소비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의 18%정도가 가구수입보다 높은 가구지출을 보여 수입으로

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지출내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식생활비였고, 주거비(임대료 등), 자녀교육비(등록금, 학습자료비 등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 의료비, 교통비 순으로 응답을 했다.

4) 저축과 부채

조사 결과 생활보호자장애인 가구주의 26.9%만이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저축액은 3-4만원이 2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9만원과 10-14만원이 각각 21.4% 였다. 저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교육비 마련(33.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내집 마련(26.8%), 노후 대비(19.6%) 등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다.

한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주 중 '빚을 지고 있다'에 대답한 사람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빚을 지고 있는 도시빈민가구가 70%로 나타난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생활보호유형별로는 거택의 30.6%, 자활의 45.1%가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해 자활보호가 거택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빚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진 사람들은 생활수준에 비해 빚의 액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50만원이상이 50%를 넘고 있었고, 1,000만원이상도 6%나 됐다. 빚을 지고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이자로 빚을 진 경우는 이웃이 28.4%로 가장 높고, 친구 14.9%, 사채가 13.4%, 은행, 정부가 각각 11.9% 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무이자로 빌려 쓴 경우는 친척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자로 빌리는 경우 은행이나 정부보다는 이웃, 사채 등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높은 이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빚을 지게된 이유는 의료비용 마련과 주택 마련이 각각 2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생활비 마련(18.1%), 사업자금 마련(16.9%), 자녀교육비 마련(6.0%) 등도 있었다.

5) 주거 환경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6.6%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전세가 23.6%, 월세가 22.1%, 친구집과 무료임대가 각각 2.4%였고 자기집에 사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주는 0.5%에 불과했다.

한편 조사대상 장애인가구가 사용하는 방 수는 2개가 63.0%로 가장 많았고 1개의 방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34.6%나 되었으며 3개이상은 1.9%에 불과했다. 3인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도 대부분 방 2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장애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6) 일상활동

대다수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일상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상활동중 자주하는 것은 종교활동, 병원이용, 공중목욕탕이용 순이었고 전혀 못하는 것은 외식, 연극.영화 등 관람, 운동경기 관람, 단체활동 순으로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가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전철·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가 전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는 12.5%, 승용차 3.4%, 오토바이 3.4%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 교통중에서는 지하철보다 버스의 이용이 많았다.

3. 취업구조

1) 현재의 직업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직업분포를 보면 무직자가 42.8%로 나타났고, 취로사업 등의 비숙련단순노동이 20.2%, 생산기능직 8.2%, 영세자영업 8.2% 등이었다. 그러나 취업해 있는 경우도 취업의 안정성을 알려주는 한달 평균 노동일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15.4%만이 20일 이상 일하고 있고 상당수가 10-20일 정도만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취업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의 일반 장애인 가구주가 자영업과 생산 기능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조사대상 장애인 중 현재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들은 14.3%에 그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얻을 경우 자영업(22.6%)과 단순서비스업(7.2%), 전문 관리 사무직(6.7%), 판매서비스업(6.7%)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의 어려움

직업을 구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고용주의 거부'와 '기술의 부족'이 11.1%와 9.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부자료의 경우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부족' 28.4%, '기술이 없어서' 12.1%, '고용주의 인식 부족' 11.3% 순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취업곤란이유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인의 연령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지체보다는 시각, 청각언어, 기타의 경우 높게 나왔고, 20대와 50, 60대의 경우 높게 나왔다. '기술이 없어서'라는 대답은 지체장애의 경우 응답률이 높았고, 20대에서 높게 나왔다. '고용주가 거부해서'라는 대답은 시각장애와 기타의 경우 16.7%, 18.2%로 높게 나왔고, 등급이 높은 경우 많이 나왔으며, 20대, 70대, 50대, 40대 순으로 많이 대답했다.

3) 가구주 본인의 소득

대상자의 80% 이상이 40만원미만의 소득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득은 직업보다는 평균노동일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어 취업직종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장애인 취업보완책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4%가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직업훈련에 관한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이가 전체의 51.9%나 되었다. 직업훈련의 종류는 특별히 편중되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매우 소수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종류를 세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업제약을 극복하는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직업훈련이 빈민장애인에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현실적합성도 없어 형식적인 복지서비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에게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의 실시 4년째인 현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중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용한 적이 있는 3.4%를 합하여 42.3%에 그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고용촉진법으로 인해 고용이 쉬워졌다고 대답한 이들은 '상당히 쉬워졌다' 1.1%, '약간 쉬워졌다' 11.4%에 불과하고 '오히려 어려워 졌다'고 응답한 이들도 5.7%나 됐다.

한편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와 장애유형과의 비교에서 지체장애인들만이 장고법으로 인해 고용이 쉬워졌다고 응답하고 시각의 경우는 쉬워지지 않았다는 응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장고법이 지체장애 중심으로 특히 시각이나 중증장애를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의료

1) 장애발생후 치료

장애발생후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5.4%였고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자들이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없어서'가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치료시설이 없어서', '치료에 대해 몰라서', '치료기관이 멀어서' 등도 15.6%, 6.3%, 3.1%로 나타나서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치료시설 미비와 치료에 대한 무지도 장애를 방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18.2% 정도 만이 치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46.8%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2) 의료재활서비스의 이용 : 재활치료와 보장구지급

의료재활서비스의 하나인 재활치료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57.7%,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17.8%이다. 재활서비스는 그나마 다른 복지서비스 보다는 이용률이 높았지만, 재활치료에 대한 빈민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본 조사의 대상자 중 정부로 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23.1%에 불과하다. 보장구를 지급받은 이들 중 27.1%는 '불편한 점이 없다'고 하였으나, 18.8%가 '다시 받을때까지의 기간이 길다'는 점을, 12.5%가 '지급액수가 너무 적어 보장구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타'에 대답한 이들도 고장이 잦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3) 병원이용정도

응답자들은 다른 일상활동에 비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9.8%가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며, 25.0%가 '가끔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 같은 빈민장애인의 강한 의료적인 욕구는 일반 장애인들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장애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낮은 소득에 근거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작업환경 등이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1) 수용시설

본 조사 응답자중 수용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생활보호 장애인은 이용한 적이 있는 7.2%를 합하여 56.2%에 불과했고, 43.8%가 '모른다'고 응답해 수용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서비스이용에 대해서 48.6%는 '모른다', 33.7%는 '알고만 있다', 17.8%는 '이용한적 있다'고 대답했다. 복지시설 서비스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접근이 쉽고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대다수의 장애인이 모르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어 빈민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전달체계, 홍보, 접근방법 등의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3) 특수교육제도

본 조사에서 특수교육제도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9.6%가 '모른다', 35.6%가 '알고만 있다', 4.8%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특수교육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

장애인에 대한 세금 및 공공요금 할인제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71.2%로 대부분의 생활보호 장애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이들과, 거택보호자들 중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금 및 공공요금할인제가 다른 서비스보다 비교적 홍보가 많이 됐고, 생활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의식

1) 가치관 · 자아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들은 대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명백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삶의 목표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 '가난이 세습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항목에는 부정적이었고, '이 세상에는 진실로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보호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와 통념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생활수준인식

현재 자신의 생활수준이 최상층 혹은 상층이라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고, 중간층 8.2%, 하층 12.0%, 최하층 79.3%로 나타나 대다수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현실과 생활수준에 대한 의식이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92년 남부장애인복지관 조사에서는 자신이 중하층이라는 응답이 40.6%, 중상층이 21.3%로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주와는 대조된다.

3)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활보호 장애인이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내집마련', '직장마련', '장애의 치료와 재활', '자녀양육 및 교육', '임금인상', '직업훈련', '가정문제 상담 및 상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돌봐 줄 가정 봉사원과 무료 탁아소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봉사원보다 무료 탁아소 설치 및 확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노후 대책

대부분의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노후대책을 세울 여유가 없거나(50.0%) 생각해 본 적이 없는(30.3%)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들도 2.4%만이 노후보장보험을 들고 있으며, 무료시설 입소 10.1%, 자녀나 친지들에 의존 5.3%, 기도원이나 절 입소 1.9%로 나타나 거의 실질적인 준비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택보호자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노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활보호자보다 더 생계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가 노후에 대해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 빈곤의 원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상당수는 빈곤의 원인을 '장애 때문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운게 없어서',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해서가', '직장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했다.

7) 빈곤극복방안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로 응답 했고,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 날 길이 없다',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순으로 조사 되었다.

8) 앞으로의 생활수준에 대한 전망

앞으로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나아질 것이다' 7.2%, '조금 나아질 것이다' 35.6%, '변함 없을 것이다' 26.6%, '조금 나빠질 것이다' 10.6%, '많이 나빠질 것이다' 7.2%로 응답해 자신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9) 단체나 정당 가입 및 활동

빈곤한 가족 및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의 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27.4%, '가입은 하나 적극적 활동 어렵다' 29.3%, '가입은 못하나 뒤에서 적극지지하겠다' 13.0%로 응답해 단체나 정당의 존재를 상당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가입하거나 활동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7.7%에 불과했다.

10) 정치적 안정, 장애인 복지, 빈부 격차에 대한 전망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정치의식을 묻는 질문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인 안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14.9%가 '매우 안정', 40.4%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빈민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과거에 비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변함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비교적 높아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에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 결과는 생활보호 장애인 대다수가 김영삼 정부하에서 정치

적 안정이나 장애인복지에 비해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망은 빈부격차에도 그대로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가 '매우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빈부격차도 '매우 줄어들 것이다'에, '비슷할 것이다'는 역시 '비슷할 것이다'에, '매우 나빠질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매우 심해질 것이다'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생활보호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조사결과분석

본 조사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생활보호 유형과 기간, 성별, 나이, 장애유형과 등급, 발생시기, 원인, 결혼여부, 가족, 출생지, 교육정도 등의 인구특성과 장애특성을 조사하고 재산, 가구 수입, 지출, 저축과 빚, 주거환경, 일상활동 등을 통한 경제생활과 이러한 경제생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취업, 수입구조를 알아보았다. 또한 장애인 문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의료의 부분과 복지서비스의 부분, 의식 등의 조사를 통해 도시빈민 장애인의 삶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특성 및 장애 특성

1. 생활보호유형

전국의 일반 생활보호자 가구주는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93년 현재 거택이 173,737(31.1%)명, 자활이 385,767(68.9%)명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거택 27,303(45.0%)명, 자활 33,333(55.0%)명으로 일반 생활보호자보다 장애인의 경우 거택보호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이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일반 가구주의 경우는 전국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하여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에는 거택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94년 자료의 경우 거택 1,514(22.7%)명, 자활 5,162(77.3%)명으로 오히려 일반 생활보호자 가구주보다 거택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서울지역의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빈곤하지 않거나, 노동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94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의료부조가 없어지게 되면서 장애인 의료부조자중 자활보호로 생활보호유형이 변경된 이들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생활보호유형은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자활보호(2종)가 대상자의 63.8%, 거택보호(1종)가 29.8%, 무응답이 6.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93년 보사부에서 집계한 장애인 생활보호자 가구주 중 거택보호 30.7%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94년 서울시 자료에서의 22.7%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1> 생활보호대상 가구주의 성별, 보호유형별 분류
단위 : 명(%)

분류		성별	거택	자활	합
전국[1]	일반	남자	61,208	224,091	285,299(51.0)
		여자	112,529	161,676	274,205(49.0)
		합	173,737 (31.1)	385,767 (68.9)	559,504 (100.0)
	장애인	남자	16,710	23,638	40,393(66.6)
		여자	10,593	9,695	20,288(33.4)
		합	27,303 (45.0)	33,333 (55.0)	60,681 (100.0)
서울[1] 93	일반	남자	2,891	14,475	17,366(40.8)
		여자	8,890	16,280	25,170(59.2)
		합	11,781 (27.7)	30,755 (72.3)	42,536 (100.0)
	장애인	남자	840	2,232	3,072(66.5)
		여자	577	969	1,546(33.5)
		합	1,417 (30.7)	3,201 (69.3)	4,618 (100.0)
서울[2] 94	일반	남자	2,935	16,002	18,937(42.1)
		여자	8,835	17,216	26,051(57.9)
		합	11,770 (26.2)	33,218 (73.8)	44,988 (100.0)
	장애인	남자	916	3,708	4,624(69.3)
		여자	598	1,454	2,052(30.7)
		합	1,514 (22.7)	5,162 (77.3)	6,676 (100.0)

자료: 1. 보건사회부,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1993)
2. 서울시 사회과 생활보호계(1994).
주 : 본문의 서울지역에 관한 자료는 94년 서울시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2> 생활보호장애 가구주의 생활보호유형

분류	빈도(명)	백분율(%)
거택보호(1종)	62	29.8
자활보호(2종)	133	63.9
무응답	13	6.3
합	208	100.0

〈표 1-3〉 장애인, 일반의 생활보호 지정기간 비교

분류	서울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전국 생활보호일반 빈도(명)	백분율(%)
1년미만	11	5.3	74,000	13.2
1-2년미만	31	14.9	158,000	28.2
2-3년미만	21	10.1		
3-4년미만	15	7.2	148,000	26.4
4-5년미만	19	9.2		
5-10년미만	64	30.8	180,000	32.2
10-15년미만	26	12.5		
15-20년미만	5	2.4		
20년이상	9	4.3		
무응답	7	3.4		
합	208	100.0%	560,000	100.0%

주 : 생활보호자현황분석과 비교.

2. 생활보호기간

조사대상 장애인가구주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기간은 '94년신규 지정자가 5.3%, '1년이상-2년미만' 14.9%, '2년이상-3년미만' 10.1%, '3년이상-4년미만' 7.2%, '4년이상-5년미만' 9.2%로 최근 5년안에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장애인이 조사대상자의 절반 가량(46.7%)을 차지했고 '5년이상-10년미만' 30.8%, '10년이상-15년미만' 12.5%, '15년이상-20년미만' 2.4%였으며, '20년이상'된 장애인도 4.3%를 차지했다(〈표 1-3〉참조).

한편 일반생활보호자의 경우 93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신규지정자가 13.2%였고 5년이상이 32.2%인데 반해 장애인은 신규지정자가 5.5%, 5년이상이 50.0%를 차지해 생활보호 지정기간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길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빈곤을 벗어날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성별

전국의 일반생활보호자가구주는 남자 285,299명, 여자 274,205명이고, 서울의 경우는 남자 18,937명, 여자 26,051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 가구주가 일반

〈표 1-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성별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서울일반장애인(%)
남	80.4	80.9
여	19.6	19.1
합	100.0	100.0

주 : 보사연 서울자료와 비교.

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생활보호대상가구에서 가구주의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표 1-1〉에서 전국의 경우 생활보호자 장애인 가구주는 남자 40,393명, 여자 20,288명이고, 서울은 남자 4,624명, 여자 2,052명으로 집계되어, 남성의 비율이 일반 생활보호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성별과 상관없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표 1-4〉에서 보듯이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중 남자가 80.4%, 여자가 19.6%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서울시 집계 비율보다 남성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기준이 본 조사의 장애인 선정기준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조사의 결과는 보사연 서울자료에서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남, 녀 비율이 80.9%, 19.1%로 조사된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4. 나이

나이는 40대가 35.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50대 28.8%, 30대 22.1%, 60대 8.2%, 70대 3.4%, 20대 1.9%, 무응답 0.5%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30대에서 50대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일반장애인 가구주와 비교해 보면 〈표 1-5〉에서처럼 60세이상의 비율이 일반 장애인 가구주 35.7%,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 11.6%로 일반장애인 가구주가 더 노년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장애인 가구주나 노인세대가 많은 생활보호자의 나이 구성과 달리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노년층 인구가 적은 것은 노년층의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중년 이후의 장애 발생으로 장애로 인한 빈곤에 오랜시간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5. 장애유형

〈표 1-5〉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나이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서울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10-19세	-	-	3	.8
20-29세	4	1.9	29	7.3
30-39세	46	22.1	66	16.6
40-49세	73	35.1	71	17.8
50-59세	60	28.8	87	21.9
60-69세	17	8.2	86	21.6
70세이상	7	3.4	56	14.1
무응답	1	.5	-	-
합	208	100.0	398	100.0

주 : 보사연 서울 자료와 비교.

〈표 1-6〉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 분류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서울시등록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지체장애	152	73.1	32,125	67.2
시각장애	12	5.8	3,662	7.7
청각·언어장애	21	10.1	5,095	10.6
기타(중복,정신지체 포함)	22	11.1	6,940	14.5
무응답	1	.5		
합	208	100.0	47,822	100.0

주 : 서울시 사회과 재활지원계 자료와 비교(93.12.31 현재 등록장애인).

서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주는 지체장애인이 7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이 10.1%, 시각장애인이 5.8%였으며 기타장애 11.2%였다. 기타장애에는 정신지체장애인, 중복장애인 그리고 그 외의 내부장애 등 현재의 복지법상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한 이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93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등록장애인과 비교해보면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 분류는 지체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뿐으로 되어 있으나 보사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자료에는 생활보호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애인(신체장애와 정신장애), 폐질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부록표 1〉 참조) 신체장애에는 지체와 청각·언어,그리고 시각장애 등이,

〈표 1-7〉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서울시 장애인의 장애등급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서울시장애인일반 빈도(명)	백분율(%)
1급	29	13.9	270	25.7
2급	65	31.3	306	29.1
3급	43	20.7	163	15.5
4급	44	21.2	104	9.9
5급	23	11.1	64	6.1
6급	2	1.0	40	3.8
무응답	2	1.0	103	9.8
합	208	100.0	1050	100.0

주 : 서울시 자료와 비교.

정신장애에는 정신지체와 정신질환이, 폐질자에는 결핵, 신부전증 등 만성적인 내부장애가 속해 있다. 이러한 생활보호자 선정에 있어 장애분류는 정신질환을 장애인에 포함시키고 폐질자를 장애인과 별도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장애를 보다 넓게 보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인정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과 각 부서간의 장애유형 분류에 대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표 1-7〉에서 나타나듯이 중증에 속하는 1급이나 2급의 장애인이 각각 13.9%, 31.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3급 20.7%, 4급 21.1%, 5급 11.1%, 6급 1.0%, 기타 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파악의 장애등급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보호자 지정이 장애등급의 경중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장애발생 시기

조사대상 장애인의 장애발생시기는 만2세에서 만6세가 27.4%, 만31-40세가 14.8%, 만41-50세가 12.5%, 출생시-만1세가 10.6%를 차지했으며 그밖에 만 51세 이상이 9.6%, 만13-18세 6.3%, 만 7세-12세 3.8%, 선천성(태아) 3.4%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1-8〉참조). 이에 반해 보사연 서울자료는 50-59세가 14.6%로 가장 높고,

〈표 1-8〉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장애발생시기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분류	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선천성(태아)	7	3.4	태어날때	12	3.0
출생 -1세	22	10.6	돐전에	2	.5
2 - 6세	57	27.4	국민학교입학전	54	13.6
7 - 12세	8	3.8	국민학교때	22	5.5
13 - 18세	13	6.3	중고등학교때	23	5.8
19 - 30세	23	11.1	20-29	55	13.8
31 - 40세	31	14.9	30-39	36	9.0
41 - 50세	26	12.5	40-49	44	11.1
51세 이상	20	9.6	50-59	58	14.6
			60-69	54	13.6
			70세이상	26	6.5
모르겠다	1	.5	미상	12	3.1
합	208	100.0	합	398	100.0

주 : 보사부 서울 자료와 비교.

〈표 1-9〉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장애인이 된 원인

분류	빈도(명)	백분률(%)
선천성	12	5.7
출산시 이상	6	2.9
교통사고	23	11.1
산업재해(직업병)	19	9.1
군복무중 안전사고 또	6	2.9
약물중독 및 오.남용	1	.5
일반외상	25	12.0
노인성질환	3	1.4
감염 및 유행성질환	44	21.2
뇌행성질환	9	4.3
의료사고	3	1.4
유전(대두증, 안짱다리)	1	.5
모르겠다	7	3.4
무응답	1	.5
기타	48	23.1
합	208	100.0

〈표 1-10〉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와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결혼여부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미혼	21	10.1	35	8.8
기혼·동거	145	69.7	288	72.4
이혼	13	6.3	4	1.0
별거.사별	27	13.0	70	17.6
기타	2	1.0	1	.3
합	208	100.0	398	100.0

주:보사연 서울자료와 비교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41.4%가 만 6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본 조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렸을 때 장애를 입을 경우, 즉 장애의 지속기간이 길 경우 더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장애발생 원인

장애발생의 원인으로는 소아마비 등을 포함하는 감염 및 유행성 질환이 21.2%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외상이 12.0%로 나타났으며 최근 늘어나는 있는 교통사고, 산업재해도 각각 11.1%, 9.1%를 차지했다. 이밖에 선천성 5.7%, 관절염 등을 포함하는 뇌행성 질환 4.3%, 출산시 이상 2.9% 기타 23.1% 등으로 조사됐다(〈표 1-9〉 참조).

9. 결혼여부

〈표 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69.7%가 기혼자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13.0%는 배우자와 별거나 사별을 했으며, 10.1%는 미혼, 6.3%는 이혼의 상태로 불안정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보사연 서울자료에서 일반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기혼·동거 72.4%, 별거.사별 17.5%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과 비슷했으나 이혼이 1.0%에 불과해 생활보호장애인들의 이혼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와 빈곤이 동시에 찾아올 경우 가정이 위태롭게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1〉 생활보호장애인과 전국, 서울 생활보호자의 가족수 비교 (가구주 포함)

단위: 명(%)

분류	생활보호 장애인	전국생활보호자전체	서울생활보호자전체
1인	23(11.1)	171,537(30.7)	15,864(37.3)
2인	27(13.0)	97,246(17.3)	7,838(18.4)
3인	41(19.7)	90,290(16.1)	7,410(17.4)
4인	57(27.4)	88,709(15.9)	6,226(14.6)
5인	32(15.4)	64,143(11.5)	3,509(8.3)
6인이상	19(13.5)	47,578(8.5)	1,689(4.0)
합	208(100.0)	559,504(100.0)	42,536(100.0)

주 : 생활보호대상자현황분석과 비교.

〈표 1-12〉 가족중 장애인 수의 비교(본인제외)

분류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서울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없다	139	66.8	349	87.7
1 명	56	26.9	47	11.8
2 명	5	2.4	2	.5
3 명	1	.5	-	-
무응답	7	3.4	-	-
합	208	100.0	398	100.0

주 : 보사연 서울 자료와 비교.

10. 가족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의 가구원수는 4인(가구주 포함)이 27.4%로 가장 많았고 3인이 19.7%, 5인이 15.4%, 2인이 13.0%, 1인가구가 11.1%, 6인이상이 13.5%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의 일반생활보호자 가구원수중 1인가구가 37.3%로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단독 가구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이며, 일반생활보호자 가구원수 2인 18.4%, 3인 17.4%, 4인 14.6%, 5인 8.4%, 6인이상 4.0%에 비해 장애인 가구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1〉 참조). 평균가구원수도 전국일반생활보호자의 경우 거택이 1.84명, 자활이 3.69명인데 반하여 본 조사의 조사대상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의 가구원수는 2.69명과 4.08명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주의 가구가 더 가구원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것은 최소한의 수입이나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생활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가구주거나 가구원 중에 있는 경우 다른 빈곤층보다 가구원수가 많다고 해도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장애인은 수입의 요인보다는 지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가족중 가구주 본인을 제외한 장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표 1-12〉에 나타나듯이 66.8%가 혼자라고 답했으나, 1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6.9%, 2명 2.4%, 3명이 0.5%로 응답해서 약 1/3 가량의 장애인 생활보호자 가구에 2명이상의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일반장애인 가구중에서 다른 장애인 가족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2.3%(1명이 11.8%, 2명이 0.5%)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보호장애인가구의 가족중 장애인수가 일반 장애인 가정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었다.

11. 출생지

조사 대상자의 출생지는 〈표 1-13〉에 나타나는 것처럼 서울이 18.3%에 불과하고

〈표 1-13〉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출생지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서울	38	18.3
강원도	16	7.7
대전	3	1.4
충청남도	23	11.1
충청북도	12	5.8
경기도	17	8.2
광주	1	.5
전라남도	29	13.9
전라북도	23	11.1
부산	5	2.4
경상남도	8	3.8
대구	5	2.4
경상북도	18	8.7
기타	10	4.8
합	208	100.0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하기 전의 지역은 전남 13.9%, 충남 전북이 각각 11.1%, 경북 8.7%, 경기 8.2%, 강원 7.7% 순이었으며 외국과 북한에서 이주해 왔다는 응답도 있었다(4.8%). 이는 서울 빈민가구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이 발달되지 못한 전라도와 충청도가 25.5%, 18.3%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다른 빈곤가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2. 학력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주구의 최종학력 분포는 <표 1-14>에서 처럼 국졸이 29.3%, 중졸이 19.7%, 무학이 13.0%, 국교중퇴 9.6%, 중학교 중퇴가 4.3%으로 조사되어, 중졸이하가 7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졸이하가 56.7%인 보사연 서울 자료에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고, 특히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의 경우는 3.8%, 11.3%로 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빈곤은 상호 관련되어 저학력이 빈곤을 야기하기도 하고 빈곤이 저학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빈민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14>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학력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무학	27	13.0	50	12.6
국교 중퇴	20	9.6	11	2.8
국졸	61	29.3	87	21.9
중학교 중퇴	9	4.3	9	2.3
중학교졸	41	19.7	68	17.1
고등학교중퇴	9	4.3	10	2.5
고등학교졸	30	14.4	94	23.6
대학(전문대)중퇴	3	1.4	11	2.8
대졸(전문대)이상	8	3.8	45	11.3
기타			12	3.1
합	208	100.0	398	100.0

주 : 1. 보사연 서울자료와 비교.
2. 기타는 보사연 서울자료에서 미취학 6(1.5%), 국민학교재학 2(0.5%), 고등학교휴학 1(0.3%) 대학이상재학 2(0.5%), 특수학교졸업 1(0.3%)을 포함한다.

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재산소유현황 : 동산과 부동산

조사대상자의 동산[8]과 부동산[9]의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동산 부동산 모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3.6%를 차지해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57.7%에 이르고, 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27.9%로 나타나 그나마 토지나 집 등의 부동산보다는 저가의 동산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동산과 부동산 모두 1,000만원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94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되는 재산정도는 자활의 경우 2,000만원, 거택 1,7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거의 절대빈곤선에 가까운 기준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준이 현실적인 빈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생활보호사업이 진정한 빈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구 월평균 수입, 수입원 및 더 희망하는 월수입

<표 2-2>를 보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31-40만원미만이 23.6%로 가장 높았고 10-20만원이 19.7%, 21-30만원이 17.8%, 10만원미만이 13.9%으로 40만원미만이 전체의 75.0%나 되었다. 61만원이상은 6.3%에 그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입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입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61만원이상 수입을 얻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구 수입을 가구원수에 의해 살펴보면 60만원 이상 수입가구중 가구원이 2명, 3명인 경우는 7.7%, 15.4%로 2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4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표 2-3> 참조).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월평균 수입은 거택보호의 61.0%가 월 20만원미만인데 반해 자활보호는 21.8%로 나타나 자활보호가 그나마 더 높은 월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2-3>). 그러나 자활보호의 평균 가구원이 더 많기 때문에 자활보호가 비교적 더 나은 수입을 올리고는 있지만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의 책정기준이 94년 현재 가구원 1인당 수입이 16만원이하(거택), 17만원이하(자활)로 결정되므로 생활보호유형으로 빈곤의 정도를 결정

8) 전세, 월세 보증금, 귀중품,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것.
9) 토지, 주택 등

〈표 2-1〉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재산정도 : 동산과 부동산 소유정도

단위 : 명(%)

동산 \ 부동산	없다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700만원 미만	1,000 만원미만	무응답	합
없다	49(23.6)	2(1.0)			1(.5)	2(1.0)	3(1.4)	1(.5)	58(27.9)
100만원 미만	19(9.1)	27(13.0)	2(1.0)	1(.5)	5(2.4)	1(.5)	2(1.0)	1(.5)	60(28.8)
200만원 미만	20(9.6)	2(1.0)	2(1.0)					8(3.8)	32(15.4)
300만원 미만	3(1.4)		1(.5)						4(1.9)
500만원 미만	8(3.8)	2(1.0)			1(.5)	2(1.0)			13(6.3)
700만원 미만	11(5.3)	2(1.0)	1(.5)			1(.5)	2(1.0)		17(8.2)
1,000만원 미만	5(2.4)	1(.5)					2(1.0)		8(3.8)
1,000만원 이상	5(2.4)	1(.5)					2(1.0)	2(1.0)	10(4.8)
무응답			2(1.0)			1(.5)		3(1.4)	6(2.9)
합	120(57.7)	37(17.8)	8(3.8)	1(.5)	6(2.9)	5(2.4)	5(2.4)	21(10.1)	208(100.0)

〈표 2-2〉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가구 월평균 수입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생활보호장애인 백분율(%)	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일반장애인가구주 백분율(%)
10만원미만	29	13.9	36	9.0
10-20만원	41	19.7	27	6.8
21-30만원	37	17.8	44	11.1
31-40만원	49	23.6	50	12.6
41-50만원	28	13.5	36	9.0
51-60만원	7	3.4	54	13.6
61-70만원[1)]	13	6.3	31	7.8
70-100미만			53	13.3
100-150미만			41	10.3
150-200미만			13	3.3
200-300미만			7	1.8
300이상			3	.8
기타.무응답	4	2.0	3	.8
합	208	100.0	398	100.0

주 : 1. 보사연 서울 자료와 비교.
2. 1)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1만원이상'으로 응답함.

〈표 2-3〉 생활보호장애인의 가구원수,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가구월평균 수입

분류	10만원 미만	10-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40만 원미만	40-50만 원미만	50-60만 원미만	60만원 이상	기타. 무응답	합
1 명	44.8	14.6	8.1	2.0					23(11.1)
2 명	24.1	17.1	18.9	8.2	3.6		7.7		27(13.0)
3 명	13.8	26.8	24.3	18.4	21.4		15.4		41(19.7)
4 명	6.9	22.0	24.3	36.7	39.3	28.6	23.1	66.7	57(27.4)
5 명	10.3	14.6	13.5	14.3	17.9	14.3	38.5		32(15.4)
6 명		4.9	8.1	16.3	7.1	28.6	7.7	33.3	19(9.1)
7 명			14.3	28.6	14.3	28.6	14.3		7(3.4)
8 명					7.1				2(1.0)
거택보호(1종)	27.4	32.3	19.4	14.5	3.2		3.2		62(29.8)
자활보호(2종)	7.5	14.3	18.0	28.6	17.3	4.5	7.5	2.3	133(63.9)
무응답	15.4	15.4	7.7	15.4	23.1	7.7	7.7	7.7	13(6.3)
합(명)	29	41	37	49	28	7	13	4	208
%	13.9	19.7	17.8	23.6	13.5	3.4	6.3	2.0	100.0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사연 서울 자료에서 일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이상-60만원미만의 수입자가 13.6%로 가장 많았고 70-100만원이 13.3%, 30-40만원이 12.6%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총수입이 92년 현재 233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50% 이상이 60만원 미만의 수입을 나타내는 것은 장애인 가구의 상당수가 비교적 빈곤층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더구나 94년 현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절대다수가 60만원도 안되는 가구수입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장애인 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조사대상가구의 주 수입원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여기서는 세대주의 정기수입(임금 등)이 38.5%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의 정기수입이 23.1%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중증생활보호자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월2만원의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의 경우 지급되는 생계지원금(6만5천원) 등의 생계보조수당이 13.9%를 차지했다. 이밖에 '자녀의 정기수입'이 7.2%, '형제, 친척의 도움'이 6.7%, 종교단체등 각종단체의 후원금 1.9%, 무응답 1.4% 등의 순으로 대답했고 이웃, 친구의 도움(0.5%), 연금(0.5%)의 응답도 있었다.

생활보호유형별 수입원은 거택보호의 경우 42.2%가 생계수당을 주 수입원이라고 밝혔고 그외에 세대주의 정기수입(31.3%), 배우자의 정기수입(9.4%), 형제.친척의 도움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자활보호는 세대주의 정기수입(41.4%), 배우자의 정기수입(30.1%), 자녀의 수입(9.0%) 순으로 조사됐다(<표 2-5> 참조). 거택보호의 경

<표 2-4>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주수입원

분류	빈도(명)	백분율(%)
세대주의 정기수입(임금 등)	80	38.5
배우자의 정기수입	48	23.1
자녀의 정기수입	15	7.2
생계 수당	29	13.9
이웃, 친구의 도움	1	.5
형제, 친척의 도움	14	6.7
연금	1	.5
각종단체의 후원금	4	1.9
기타	13	6.3
무응답	3	1.4
합	208	100.0

<표 2-5>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의 수입원

분류	세대주 정기 수입	배우자 정기 수입	자녀 정기 수입	생계 보조 수당	이웃, 친구의 도움	형제, 친척의 도움	연금	종교, 각종단체 후원	기타	무응답	합
거택보호(1종)	30.6	9.7	1.6	43.5		4.8		4.8	4.8		62(29.8)
자활보호(2종)	41.4	30.1	9.0	1.5		7.5	.8	.8	6.8	2.3	133(63.9)
무응답	46.2	15.4	15.4		7.7	7.7			7.7		13(6.3)
합(명)	80	48	15	29	1	14	1	4	13	3	208
%	38.5	23.1	7.2	13.9	.5	6.7	.5	1.9	6.3	1.4	100.0

<표 2-6>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의 더 원하는 수입

분류	빈도(명)	백분율(%)
10-20만원	32	15.4
21-30만원	43	20.7
31-40만원	31	14.9
41-50만원	19	9.1
51-60만원	29	13.9
61만원 이상	43	20.7
현재로 만족한다	8	3.8
무응답	3	1.4
합	208	100.0

<표 2-7>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의 더 원하는 수입

분류	없다	10-20	21-30	31-40	41-50	51-60	61만원이상	기타(무응답)	합
거택보호(1종)	4.8	27.4	25.8	21.0	3.2	9.7	6.5	1.6	62(29.8)
자활보호(2종)	3.8	9.8	18.0	13.5	11.3	15.8	26.3	1.5	133(63.9)
무응답		15.4	23.1		15.4	15.4	30.8		13(6.3)
합(명)	8	32	43	31	19	29	43	3	208
%	3.8	15.4	20.7	14.9	9.1	13.9	20.7	1.4	100.0

우 최소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생계수당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생계수당이 생활의 보조수당이 아닌 생계비 차원에서 지급되어야 함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빈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최소한도로 보장될 것이다. 현재로는 생계비의 지원이 정부예산 등을 이유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보다 매월 어느정도의 수입을 더 원하는가를 알아본 <표 2-6>에서는 21-30만원과 61만원이상을 원하는 장애인이 각각 20.7%로 나타났고, 10-20만원이 15.4%, 31-40만원이 14.9%였으며 그밖에 41-50만원 9.1%, '현재로 만족한다' 3.8%, 기타1.4%의 순이었다.

생활보호유형별로는 거택보호의 73.5%가 4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더 원하는데에 반해 자활보호는 60%가량이 41만원 이상의 수입을 더 바라고 있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택보호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희망수입을 원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2-7>참조) 이는 생활보조금이 주 수입원인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을 염두에 두어 현실성 있는 추가 수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3.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월지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0만원-20만원미만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1-30만원이 18.8%, 10만원 미만이 13.0%로 나타나 전체의 50% 이상이 30만원미만의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표 2-8>에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일반 장애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이 50-60만원미만 13.3%, 70-100만원미만 13.1% 등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가구가 훨씬 적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은 233만5천3백원('92년 현재)으로 일반 장애인 가구주 가구의 지출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생활보호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택보호의 경우 68.8%가 월 20만원미만의 지출을 하는 반면 자활보호는 60%가량이 21-50만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월지출액도 생활보호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수입에 대한 월지출은 10만원미만의 수입이 있는 가구 중 62.1%가 10만원미만의 지출을, 10-20만원의 수입가구의 73.2%가 20만원미만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가 수입에 비례한 지출을 하고 있었으나 10만원미만의 수입가구중 37.9%, 10-20만원미만의 수입가구중 17.1%, 21-30만원미만의 수입 가구중 16.2% 등

<표 2-8> 생활보호장애인가구주 가구와 일반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지출액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생활보호장애인 백분율(%)	일반장애인가구주 빈도(명)	일반장애인가구주 백분율(%)
10만원 미만	27	13.0	35	8.8
10-20만원	52	25.0	26	6.5
21-30만원	39	18.8	49	12.3
31-40만원	35	16.8	51	12.8
41-50만원	32	15.4	39	9.8
51-60만원	12	5.8	53	13.3
61-70만원[1)]	10	4.8	30	7.5
70-100미만			52	13.1
100-150미만			43	10.8
150-200미만			11	2.8
200-300미만			7	1.8
300이상			2	.5
기타.무응답	1	.5		
합	208	100.0		100.0

주 : 1. 보사연 서울 자료와 비교.
2. 1)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61만원이상'으로 응답함.

<표 2-9> 생활보호유형, 가구수입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 가구지출

분류	10만원 미만	10-20만 원미만	20-30만 원미만	30-40만 원미만	40-50만 원미만	50-60만 원미만	60만원 이상	무응답	합
거택보호(1종)	24.2	43.5	19.4	9.7	3.2				62(29.8)
자활보호(2종)	6.8	17.3	19.5	19.5	20.3	9.0	6.8	.8	133(63.9)
무응답	23.1	15.4	7.7	23.1	23.1		7.7		13(6.3)
10만원 미만	62.1	20.7	3.4		6.9		6.9		29(13.9)
10-20만원	9.8	73.2	7.3	4.9	4.9				41(19.7)
21-30만원	5.4	27.0	51.4	10.8	5.4				37(17.8)
31-40만원	2.0	6.1	22.4	46.9	14.3	6.1	2.0		49(23.6)
41-50만원	3.6	3.6	14.3	17.9	50.0	3.6	7.1		28(13.5)
51-60만원					42.9	57.1			7(3.4)
61만원 이상		15.4	7.7	7.7	15.4	15.4	38.5		13(6.3)
무응답.기타	25.0					50.0		25.0	4(2.0)
합(명)	27	52	39	35	32	12	10	1	208
%	13.0	25.0	18.8	16.8	15.4	5.8	4.8	.5	0.0

〈표 2-10〉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출순위에 따른 지출내용

분류	지출내용1 (명)	(%)	지출내용2 (명)	(%)	지출내용3 (명)	(%)
의.식생활비	79	38.0	63	30.3	45	21.6
자녀 교육비	35	16.8	36	17.3	25	12.0
의료비	19	9.1	20	9.6	27	13.0
교통비	3	1.4	12	5.8	28	13.5
공공요금비	2	1.0	13	6.3	24	11.5
주거비(임대료)	57	27.4	43	20.7	31	14.9
문화생활비			1	.5	2	1.0
생활용품 구입비	2	1.0	4	1.9	8	3.8
저축	5	2.4	4	1.9	6	2.9
보장구 구입비					1	.5
기타	6	2.9	9	4.3	8	3.8
무응답			3	1.4	3	1.4
합	208	100.0	208	100.0	208	100.0

은 전체의 18%정도가 가구수입보다 높은 가구지출을 보였다(〈표 2-9〉 참조).

이를 보사연의 전국자료(p.18)에서 전체의 7.3%가 수입보다 높은 지출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때 수입이 적은 빈민가구의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의 소비:예로 주거비, 식비 등)로 인해 초과 지출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지출내역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고른 것이 〈표 2-10〉에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자의 38.0%가 의식생활비를 첫번째 지출항목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주거비(임대료 등) 27.4%, 자녀교육비(등록금, 학습자료비 등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 16.8% 순으로 응답을 했다.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역시 의식생활비가 30.3%, 주거비가 20.7%, 자녀교육비가 17.3%로 나타났고, 세번째 순위에 가서 의식생활비(25.0%) 다음으로 자녀교육비(17.2%), 의료비(15.6%), 교통비(14.1%) 등이 많이 응답되었다.

그러나 생활보호유형별로 보면 첫번째 지출항목으로 거택보호 장애인들은 주거비(32.8%)를 첫번째로, 의식생활비(31.3%)를 두번째로 뽑은 반면 자활보호 장애인들은 의식생활비가 38.3%를 차지해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이 주거비(26.3%), 자녀교육비 순으로 나타나 한달에 쓰여 지는 지출내역중 거택보호장애인들에게는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월 지출의 특징으로 일반적인 중산층 가구에서의 적은 지출내역인 교통비,

공공요금비 등이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4. 저축과 부채

조사대상자의 저축과 빚 유무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빈곤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생활보호자장애인 가구주는 26.9%만이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 2-11〉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동익(1985, p.76)의 도시빈민연구에서의 36.3%보다도 낮은 것으로 빈민장애인의 저축이 일반빈민가구의

〈표 2-11〉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한다	56	26.9
안한다	151	72.6
무응답	1	.5
합	208	100.0

〈표 2-12〉 장애유형, 나이에 따른 생활보호 장애인의 저축여부

분류	한다	안한다	무응답	합
지체장애	25.0	75.0		152(73.1)
시각장애	16.7	83.3		12(5.8)
청각 언어장애	66.7	28.6	4.8	21(10.1)
기타(정신, 중복장애 포함)	9.1	90.9		22(10.60
무응답		100.0		1(.5)
20-29세	50.0	50.0		4(1.9)
30-39세	37.0	63.0		46(22.1)
40-49세	30.1	68.5	1.4	73(35.1)
50-59세	20.0	80.0		60(28.8)
60-69세	5.9	94.1		17(8.2)
70-79세	14.3	85.7		7(3.4)
무응답	100.0			1(.5)
합(명)	56	151	1	208
%	26.9	72.6	.5	100.0

저축보다도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축여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66.7%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높은 저축률을 보여주었고 지체장애인의 25.3%, 시각장애인의 16.7%가 저축하고 있었으며, 중복장애인의 경우는 90.5%가 저축을 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보호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나이별로는 20대, 30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2> 참조).

한편 저축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저축액은 3-4만원이 25.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5-9만원과 10-14만원이 각각 21.4%, 1-2만원이 12.5%을 차지했으며 이밖에 30만원이상 7.1%, 15-19만원 5.4%, 20-29만원 3.6%, 기타 3.6% 순이었다(<표 2-13>).

이들이 저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교육비 마련(33.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내집 마련(26.8%), 노후 대비(19.6%), 결혼비용 마련(7.1%) 등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사업자금마련(1,8%), 의료재활(1.8%) 등의 응답을 보였다(<표 2-14>).

한편 생활보호유형별 저축목적은 거택보호의 경우 자녀교육비가 37.5%로 가장 높았고 노후대비 25.0%, 내집마련 12.5% 순이었으며, 자활보호의 경우 역시 자녀교육비가 40.6%, 내집마련이 28.1%, 노후대비가 12.5% 순으로 조사돼 자녀교육을 제외하면 거택보호는 노후대비, 자활보호는 내집마련이 저축의 주요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5>).

<표 2-13> 생활보호장애인의 월평균 저축액

분류	빈도(명)	백분율(%)
1 - 2만원	7	12.5
3 - 4만원	14	25.0
5 - 9만원	12	21.4
10 - 14만원	12	21.4
15 - 19만원	3	5.4
20 - 29만원	2	3.6
30만원 이상	4	7.1
기타	1	1.8
무응답	1	1.8
합	56	100.0

<표 2-14>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목적

분류	빈도(명)	백분율(%)
내집 마련	15	26.8
자녀 교육비 마련	19	33.9
노후 대비	11	19.6
결혼비용마련	4	7.1
사업자금 마련	1	1.8
의료재활	1	1.8
기타	5	8.9
합	56	100.0

<표 2-15>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저축목적

분류	내집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대비	결혼비용 마련	사업자금 마련	의료 재활	기타	합
거택보호(1종)	12.5	37.5	25.0				25.0	16(28.6)
자활보호(2종)	28.1	40.6	12.5	9.4	3.1	3.1	3.1	32(57.1)
무응답	50.0		37.5	12.5				8(14.3)
합(명)	15	19	11	4	1	1	5	56
%	26.8	33.9	19.6	7.1	1.8	1.8	8.9	100.0

한편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 중 '빚을 지고 있다'에 대답한 사람은 <표 2-16>에서 보듯이 39.9%로 나타났다. 이는 빚이 있는 도시빈민가구가 70%로 나타난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그러나 93년 10월 말 국민은행의 전국 도시지역 가계금융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봉급생활자는 24%, 일용노동자는 32%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보다 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겨레신문 94년 5월 26일자).

빚을 진 사람들은 생활수준에 비해 빚의 액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백5십만원이상이 50%를 넘고 있었고, 1천만원 이상도 6%나 됐다(<표 2-18> 참조). 도시가구의 평균 부채액이 3백51만5천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빚을 지고 있는 대상을 살펴보면 <표 2-19>에서 보듯이 먼저 이자로 빚을 진 경우는 이웃이 28.4%로 가장 높고 친구 14.9%, 사채가 13.4%, 은행.정부가 각각

〈표 2-16〉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의 빚 유무

분류	빈도(명)	백분율(%)
있다	83	39.9
없다	119	57.2
무응답	6	2.9
합	208	100.0

〈표 2-17〉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빚유무

분류	무응답	있다	없다	합
거택보호(1종)	3.2	30.6	66.1	62(29.8)
자활보호(2종)	2.3	45.1	52.6	133(63.9)
무응답	7.7	30.8	61.5	13(6.3)
합(명)	6	83	119	208
%	2.9	39.9	57.2	100.0

11.9% 등의 순으로 나왔으며, 무이자로 빌려 쓴 경우는 친척이 39.1%로 가장 높았고, 형제가 30.4%, 친구가 8.7%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로 빌리는 경우 은행이나 정부보다는 이웃, 사채 등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구의 52.6%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가 불안정한 상태의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있어 오히려 부채를 증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조사대상자가 빚을 지게된 이유는 〈표 2-20〉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비용 마련과 주택 마련이 각각 2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생활비 마련(18.1%), 사업자금 마련(16.9%), 자녀교육비 마련(6.0%), 관혼상제(3.6%), 보장구 구입(1.2%) 기타(6.0%)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생활보호유형별로는 거택의 30.6%, 자활의 45.1%가 빚을 지고 있다고 응답해 자활보호가 거택보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빚을 진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표 2-17〉), 그 이유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주택마련(36.8%)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고 의료비용마련과 생활비 마련도 각각 26.3%가 됐으며, 자활보호는 의료비용마련 23.3%, 사업자금마련 21.7%, 주택 마련 18.3% 등으로 응답하여 생활보호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2-21〉 참조).

〈표 2-18〉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의 빚 액수

분류	빈도(명)	백분율(%)
30만원 미만	2	2.4
31 - 100만원	13	15.7
101 - 150만원	10	12.0
151 - 200만원	8	9.6
201 - 250만원	5	6.0
251 - 300만원	12	14.5
301 - 500만원	13	15.7
501 - 700만원	7	8.4
701 - 1.000만원	8	9.6
1001 만원 이상	5	6.0
합	83	100.0

〈표 2-19〉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가 빚진 대상

빚진 대상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은행	사채	정부	기타	합
이자(명)	0	5	10	5	19	8	9	8	3	67
%	0.0	7.5	14.9	7.5	28.4	11.9	13.4	11.9	4.5	100.0
무이자(명)	0	7	2	9	1	0	0	0	4	23
%	0.0	30.4	8.7	39.1	4.3	0.0	0.0	0.0	17.4	100.0

〈표 2-20〉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주의 빚진 이유

분류	빈도(명)	백분율(%)
생활비 마련	15	18.1
의료비용 마련	20	24.1
보장구 구입	1	1.2
자녀교육비	5	6.0
주택 마련	20	24.1
사업	14	16.9
관혼상제	3	3.6
기타	5	6.0
합	83	100.0

〈표 2-21〉 생활보호유형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의 빚진 이유

분류	생활비 마련	의료비용 마련	보장구 구입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사업	관혼 상제	기타	합
거택보호(1종)	26.3	26.3	5.3		36.8	5.3			19(22.9)
자활보호(2종)	15.0	23.3		8.3	18.3	21.7	5.0	8.3	60(72.3)
무응답	25.0	25.0			50.0				4(4.8)
합(명)	15	20	1	5	20	14	3	5	83
%	18.1	24.1	1.2	6.0	24.1	16.9	3.6	6.0	100.0

5. 주거 환경

빈민가구의 주택상황은 빈곤의 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성중의 하나이다.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의 주거 형태는 조사대상자의 46.6%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전세가 23.6%, 월세가 22.1%, 친구집과 무료임대가 각각 2.4%였고 자기집에 사는 생활보호자 장애인가구주는 0.5%에 불과했다(〈표 2-22〉참조).

생활보호 장애인 상당수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94년 현재 서울시 7개구 16개동에 있어,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 등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3만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고 그 중 장애인이 가구주인 세대는 5천세대정도가 된다. 영구임대아파트는 89년 2월 발표로 현실화된 것인데 지금까지의 주택정책과는 다르게 영세민만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빈민가구만을 한 지역에 모아 놓아 지역을 슬럼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사연 서울자료의 장애인실태조사중 서울 거주 장애인 가구주가 살고있는 주거형태는 자기집이 42.7%로 월등히 높았고 전세 31.4%, 월세 23.4%, 기타 2.5%로 나타나 생활보호장애인에 비해서는 주거가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전체 생활보호자 주택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자기집 0.1%, 전세 26.0%, 월세 49.2%, 무료임대 18.8%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다른 측면으로 조사대상 장애인가구가 사용하는 방 수를 살펴보면 2개가 63.0%로 가장 많았고 1개의 방에서 생활하는 가구도 34.6%나 되었으며 3개이상은 1.9%에 불과했다(〈표 2-23〉참조). 3인이상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도 대부분 방 2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장애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다(〈표 2-24〉참조). 대부분 가구의 방이 2개인 것은 방 2개를 기본으로 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상자 중 상당수가 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 생활보호장애인, 일반장애인, 일반생활보호자의 주거형태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서울장애인가구주 빈도(명)	백분율(%)	일반생활보호자 빈도(명)	백분율(%)
자기집	1	.5	170	42.7	34	0.1
전세	49	23.6	125	31.4	11,073	26.0
월세	46	22.1	93	23.4	20,938	49.2
친척집	3	1.4	-	-	-	-
친구집	5	2.4	-	-	-	-
영구임대아파트	97	46.6	-	-	-	-
무료임대	5	2.4	-	-	7,977	18.8
기타	2	1.0	10	2.5	2,514	5.9
합	208	100.0	398	100.0	42,536	100.0

주 : 보사연서울자료, 생활보호자현황분석과 비교.

〈표 2-23〉 생활보호대상장애인 가구가 사용하는 방 수

분류	빈도(명)	백분율(%)
1개	72	34.6
2개	131	63.0
3개이상	4	1.9
무응답	1	.5
합	208	100.0

〈표 2-24〉 가족수에 따른 생활보호장애인가구의 방 수

분류	1개	2개	3개	무응답	합
1명	91.3	4.3	4.3		23(11.1)
2명	48.1	48.1		3.7	27(13,0)
3명	41.5	58.5			41(19.7)
4명	28.1	70.2	1.8		57(27.4)
5명	15.6	78.1	6.3		32(15.4)
6명		100.0			19(9.1)
7명		100.0			7(3.4)
8명		100.0			2(1.0)
합(명)	72	131	4	1	208
(%)	34.6	63.0	1.9	.5	100.0

6. 일상활동

일상활동은 빈곤으로 인한 제약과 장애로 인한 제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빈민장애인이 인간적인 삶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부분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사결과 대다수 생활보호 장애인들의 일상활동은 <표 2-25>에서 보듯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상활동중 자주하는 것은 종교활동 33.7%, 병원 29.8%, 공중목욕탕 이용 16.8% 순으로 많고, 가끔하는 것은 이.미용실 이용 46.2%, 병원 25.0%, 친구.친척방문 29.3% 순으로 많으며, 전혀 못하는 것은 외식 64.9%, 연극.영화 등 관람 80.5%, 운동경기 관람 79.8%, 단체활동 56.7% 순으로 많다. 일상활동정도는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활보호유형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92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상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중 본 조사와 같은 내용을 비교해 보면 모든 문항에서 '한다'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 방문(40.5%), 쇼핑(41.8%), 외식(34.4%), 운동경기 관람(20.1%), 연극.영화 관람(17.6%)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26>). 이는 빈민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일

<표 2-25>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일상활동 정도

단위: 명 (%)

분류	자주한다	가끔한다	대체로 못한다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한다	무응답	총합(%)
공중목욕탕	35(16.8)	48(23.1)	22(10.1)	25(12.0)	77(37.0)	2(1.0)	208(100)
이.미용실	28(13.5)	96(46.2)	43(20.7)	20(9.6)	19(9.0)	2(1.0)	208(100)
병원	62(29.8)	52(25.0)	26(12.5)	44(21.2)	22(10.6)	2(1.0)	208(100)
외식	3(1.4)	18(8.7)	4(1.4)	44(21.2)	135(64.9)	5(2.4)	208(100)
연극,영화 등	-	3(1.4)	1(0.5)	30(14.4)	168(80.5)	6(2.9)	208(100)
운동경기	2(1.0)	6(2.9)	-	30(14.4)	166(79.8)	4(1.9)	208(100)
쇼핑	5(2.4)	16(7.7)	17(8.1)	36(17.3)	127(61.1)	7(3.4)	208(100)
종교활동	70(33.7)	22(10.6)	18(8.7)	19(9.0)	73(35.1)	6(2.9)	208(100)
친구,친척방문	26(12.5)	61(29.3)	21(10.1)	46(22.1)	50(24.0)	4(1.9)	208(100)
공공장소방문	16(7.7)	32(15.4)	23(11.0)	45(21.6)	88(42.3)	4(1.9)	208(100)
단체활동	17(8.2)	20(9.6)	12(5.8)	36(17.3)	118(56.7)	5(2.4)	208(100)

<표 2-26> 서울시 장애인의 일상활동의 정도

단위: 명 (%)

분류	못한다	대체로 못한다	대체로 한다	한다	안한다	합
공중목욕탕	18.1	13.2	14.0	42.3	12.4	100
이.미용실	10.4	8.2	24.4	51.7	5.3	100
병원 이용	13.4	12.4	26.6	42.6	5.3	100
외식	15.3	14.7	20.6	34.4	15.0	100
연극,영화 등	24.6	17.4	7.2	17.6	33.2	100
운동경기	25.1	17.8	11.6	20.1	25.4	100
쇼핑	16.9	20.1	13.0	35.4	14.6	100
종교활동	14.8	10.7	19.3	41.8	13.4	100
친구,친척방문	15.3	12.9	15.5	39.6	16.7	100
공공장소방문	15.5	12.6	12.6	40.5	18.8	100
취미활동	17.1	15.2	20.8	29.6	17.3	100

자료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1992).

<표 2-27> 서울장애인가구주의 여가시간이용방법

분류	빈도(명)	백분율(%)
독서	44	11.1
음악감상	15	3.8
종교활동	42	10.6
운동	40	10.1
집안일	44	11.1
친구교제	33	8.3
라디오청취	25	6.3
오락	4	1.0
텔레비젼시청	94	23.6
기타	42	10.6
미상	15	3.8
합	398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반의 장애인들의 생활보다 훨씬 제약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장애라는 요소보다 빈곤이라는 요소가 더 큰 제약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보사연 서울자료에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텔레비젼 시청이 23.6%, 독서와 집안일이 각각 11.1%, 종교활동 10.6%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조사와 내용은 다르지만 장애인의 문화생활이나 여가시간 보내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27>).

조사대상자가 외출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표 2-28>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버스가 5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철·지하철·기차가 16.3%으로 나타나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가 전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시는 12.5%, 승용차 3.4%, 오토바이 3.4%로 나타났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1992년 서울시장애인 복지수요 실태조사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전체의 58.9%로 본 조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등록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실시돼 교통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지하철이 아닌 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지하철내 편의시설 설치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이동에 제약을 주는 계단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인 엘리베이터는 134개 서울 지하철역사중 학여울역 1곳에, 휠체어 리프트는 27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역마다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절전을 위해 출, 퇴근 시간에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8> 생활보호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교

분류	생활보호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일반 장애인 빈도(명)	백분율(%)
버스	104	50.0	238	58.9
전철, 지하철, 기차	34	16.3		
택시	26	12.5	54	13.4
승용차	7	3.4	59	14.6
오토바이	7	3.4		
도보	14	6.7	48	11.9
기타	13	6.3	5	1.2
무응답	3	1.4		
합	208	100.0	404	100.0

주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자료와 비교.

<표 2-29> 장애유형별, 등급별 생활보호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분류	버스	전철, 기차	택시	승용차	오토바이	도보	기타	무응답	합
지체장애	51.3	15.8	13.2	3.3	3.9	5.3	5.3		152(73.1)
시각장애	50.0	16.7	25.0			8.3			12(5.8)
청각, 언어장애	57.1	28.6		4.8	4.8	4.8			21(10.1)
기타	31.8	9.1	13.6	4.5		18.2	22.7		22(10.6)
무응답	100.0								1(0.5)
1등급	20.7	13.8	31.0	13.8	3.4	3.4	10.3	3.4	29(13.9)
2등급	50.8	12.3	12.3	3.1	1.5	9.2	9.2	1.5	65(31.3)
3등급	60.5	9.3	9.3	2.3	11.6	4.7	2.3		43(20.7)
4등급	52.3	25.0	11.4			6.8	2.3	2.3	44(21.2)
5등급	60.9	26.1				4.3	8.7		23(11.1)
6등급	50.0	50.0							2(1.0)
무응답	50.0					50.0			2(1.0)
합(명)	104	34	26	7	7	14	13	3	208
%	50.0	16.3	12.5	3.4	3.4	6.7	6.3	1.4	100.0

한편 <표 2-29>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과 교통수단 이용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우선 버스와 전철·지하철·기차의 이용은 청각·언어장애인중 각각 57.1%, 28.6%로 가장 많으며, 택시는 시각장애인중 25.0%가 이용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중 31.0%가 택시를 이용해 가장 높고(2등급중 12.3%), 2등급 이상은 버스 이용이 모두 50%를 넘고 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1.2.3등급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토바이는(특히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경우) 삼륜 오토바인 경우가 많고, 승용차는 본인의 것과 타인의 것을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3. 취업구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구조를 밝히는 것은 장애인 빈곤에 접근하는 유용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도시빈민 가구의 경제활동의 특징이 무직의 비중이 높다는 것,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단순노동, 영세자영업 등 수입이 낮고 경기변동과 계절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취업일수와 노동의 장소도 일정하지 않은 불완전 취업이라는 점[10]이라고 할 때 빈민 장애인의 취업실태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직업, 노동일, 직업만족, 새로운 직업

1) 현재의 직업과 노동일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현재 취업구조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무직자는 4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조사의 경우 실업율이 32.7%로 조사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이 6.5%로 장애인 생활보호자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층에서도 장애인들이 더 노동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부록표 11> 참조).

장애인 무직자 중에는 실제로 일할 의지가 없거나, 현재의 상태에서 노동이 불가능해서 비경제활동인구[11]로 분류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일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거나 적합한 직종을 찾지 못해서 무직자로 남아있게 된다. 특히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는 기타(13.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무직자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후 논의될 취업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무직자들중 31.5%가 '적합한 직종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장애가 심해서 취업할 수 없다는 대답을 포함하는 '기타'에는 29.2%만이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표 3-11> 참조).

직업을 가진 경우를 살펴보면 비숙련 단순노동이 20.2%, 생산기능직 8.2%, 영세

10)정동익, 도시빈민연구, 1985, p.82

11)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란 '만14세이상 세대원중 가사종사자, 학생 및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지칭한다. 보사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1993:71). 장애인은 흔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노동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표 3-1> 생활보호 장애인가구주의 현재 종사하는 직업

분류	빈도(명)	백분율(%)
단순 사무직	1	.5
자영업	4	1.9
영세자영업	17	8.2
판매.서비스업	3	1.4
단순 서비스업	4	1.9
생산.기능직	17	8.2
비숙련 단순 노동	42	20.2
무직	89	42.8
기타	27	13.0
무응답	4	1.9
합	208	100.0

자영업 8.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상당수가 종사하는 비숙련 단순노동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취로사업[12]과 지역에 있는 작업장이나 복지관을 통한 집단작업(봉투붙이기, 포장, 인형옷 만들기 등), 시간제 파출부 등이 있다. 또한 아무런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가내부업 등도 포함된다. 한편 영세자영업에는 구두수선, 가판, 노점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의 주요한 생계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취업의 안정성을 알려주는 한달 평균 노동일은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대상자의 15.4%만이 20일 이상 일하고 있고 상당수가 10-20일 정도만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취업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들이 직업으로 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원하는 사람은 많고 일거리는 제한되어 있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한달에 열흘 이상은 하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의 대부분인 노점, 행상업도 계절적, 기후적 요인에 의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노동 가능한 날이 많지 않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 생활보호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전체 생활보호자의 60.4%가 일일고용의 상태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부록표 11> 참조).

12) 취로사업은 미봉적이고 소비적인 영세민 구호를 지양하고 장기적이며 생산적인 구호 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된 일은 공원청소, 하수도청소 등의 지역내 환경정비이고, 그 형태는 일일고용의 형태이며, 일당은 94년 현재 14,000원이다.

〈표 3-2〉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한달 평균 노동일

분류	빈도(명)	백분율(%)
5일미만	5	2.4
5-10일	17	8.2
11-15일	27	13.0
16-20일	27	13.0
21-25일	18	8.7
26-30일	14	6.7
전혀 일하지 않는다	89	42.8
무응답	11	5.3
합	208	100.0

〈표 3-3〉 일반장애인 가구주의 활동분야에 따른 종사상의 위치

분류	자영업주	고용주	상시 고용자	임시 고용자	일일 고용자	가족 종사자	기타	합
자영업주	85.5	11.3	1.6			1.6		62(35.4)
전문관리직	12.5	18.8	68.8					16(9.1)
단순사무직			85.7				14.3	7(4.0)
서비스직			80.0	10.0	10.0			10(5.7)
생산기능직	3.2		77.4	12.9	6.5			31(17.7)
단순노무직	2.0	6.1	16.3	20.4	55.1			49(28.0)
합(명)	57	13	58	15	30	1	1	175
%	32.6	7.4	33.1	8.6	17.1	.6	.6	100.0

자료 : 보사연(서울).

이러한 생활보호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형태를 다른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국조사의 경우 취업직종이 농어민 13.1%, 자영업 6.4%, 단순노무직 5.5%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부록표 13〉 참조), 서울시 자료(서울시, p.89, 90)의 경우 기술.기능직 11.9%, 자영업 10.5%, 단순노무직은 4.6%로 나타나, 단순노무직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반장애인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사연 서울 자료에서 활동분야에 따른 종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3-3〉을 보면 자영업주와 생산기능직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직종과는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순노무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고용과 일일고용은 생활보호자들보다는 적게 나타나 취업의 불안정성도 낮다.

취업구조를 나이, 장애유형, 교육정도와 관련시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표 3-4〉 나이, 장애유형, 교육정도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취업분야

분류	무응답	단순 사무직	자영업	영세 자영업	판매 서비스	단순 서비스	생산 기능직	비숙련 단순노동	무직	기타	합
20-29세					16.7		33.3		33.3	16.7	6 (2.9)
30-39세		1.9	1.9	9.6	1.9	3.8	13.5	17.3	38.5	11.5	52 (25.0)
40-49세	4.2		1.4	12.5	1.4	2.8	6.9	20.8	38.9	11.1	72 (34.6)
50-59세			3.7	5.6			3.7	18.5	53.7	14.8	54 (26.0)
60-69세								50.0	31.3	18.8	16 (7.7)
70-79세	14.3								71.4	14.3	7 (3.4)
무응답							100.0				1 (.5)
지체장애	2.6	.7	1.3	7.9	2.0	2.0	7.9	21.7	38.2	15.8	152 (73.1)
시각장애				8.3		8.3		8.3	66.7	8.3	12 (5.8)
청각.언어장애			4.8	14.3			23.8	28.6	23.8	4.8	21 (10.1)
기타			4.5	4.5				9.1	77.3	4.5	22 (10.6)
무응답									100.0		1 (.5)
무학			3.7	11.1			7.4	18.5	48.1	11.1	27 (13.0)
국교중퇴	5.0			5.0	5.0		5.0	40.0	25.0	15.0	20 (9.6)
국졸			3.3	11.5	1.6	3.3	6.6	23.0	34.4	16.4	61 (29.3)
중학교중퇴	11.1						11.1	22.2	33.3	22.2	9 (4.3)
중학교졸	2.4		2.4	7.3			12.2	19.5	46.3	9.8	41 (19.7)
고등학교중퇴				11.1			22.2		66.7		9 (4.3)
고등학교졸	3.3	3.3			3.3	6.7	6.7	10.0	60.0	6.7	30 (14.4)
대학(전문재)중퇴				33.3				33.3	33.3		3 (1.4)
대졸(전문대)이상				12.5				12.5	37.5	37.5	8 (3.8)
거택보호(1종)	1.6		1.6	8.1	1.6		6.5	16.1	53.2	11.3	62 (29.8)
자활보호(2종)	2.3	.8	2.3	9.0	1.5	3.0	9.8	19.5	38.1	12.8	133 (63.9)
무응답								46.2	30.8	23.1	13 (6.3)
합(명)	4	1	4	17	3	4	17	42	89	27	208
%	1.9	.5	1.9	8.2	1.4	1.9	8.2	20.2	42.8	13.0	100.0

〈표 3-5〉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활보호유형, 직업에 따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평균노동일

분류	5일미만	5-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6-30일	일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
지체장애	3.3	7.9	13.8	13.8	9.2	7.2	38.2	6.6	152 (73.1)
시각장애		8.3	16.7		8.3		66.7		12 (5.8)
청각·언어장애		14.3	9.5	28.6	14.3	9.5	23.8		21 (10.1)
기타		4.5	9.1			4.5	77.3	4.5	22 (10.6)
무응답							100.0		1 (.5)
1등급		3.4	10.3	6.9		3.4	72.4	3.4	29 (13.9)
2등급	4.6	6.2	13.8	12.3	12.3	9.2	38.5	3.1	65 (31.3)
3등급	2.3	9.3	7.0	7.0	9.3	11.6	39.5	14.0	43 (20.7)
4등급		15.9	15.9	13.6	11.4	2.3	36.4	4.5	44 (21.2)
5등급	4.3		21.7	30.4	4.3	4.3	34.8		23 (11.1)
6등급							100.0		2 (1.0)
무응답		50.0		50.0					2 (1.0)
단순사무직					100.0				1 (.5)
자영업				50.0		50.0			4 (1.9)
영세자영업	5.9	5.9	23.5	29.4	17.6	17.6			17 (8.2)
판매서비스업				33.3	33.3	33.3			3 (1.4)
단순서비스업			25.0	50.0		25.0			4 (1.9)
생산기능직		5.9	17.6	23.5	35.3	17.6			17 (8.2)
비숙련단순노동	4.8	14.3	33.3	23.8	16.7	4.8		2.4	42 (20.2)
무직							100.0		89 (42.8)
기타	7.4	33.3	11.1	3.7		7.4		37.0	27 (13.0)
무응답			50.0	50.0					4 (1.9)
거택보호(1종)	1.6	11.3	8.1	16.1	1.6	4.8	53.2	3.2	62 (29.8)
자활보호(2종)	3.0	7.5	14.3	12.0	10.5	8.3	39.1	5.3	133 (63.9)
무응답			23.1	7.7	23.1		30.8	15.4	13 (6.3)
합(명)	5	17	27	27	18	14	89	11	208
%	2.4	8.2	13.0	13.0	8.7	6.7	42.8	5.3	100.0

3-4〉에서 보듯이 비숙련 단순노동의 경우 나이별로 큰 차이없이 많은 이들이 종사하고 있었고, 생산기능직에는 20, 30대가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에는 40대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와 기타의 경우 무직자가 많으며(66.7%, 77.3%), 청각의 경우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이가 23.8%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생활보호유형별로는 무직자가 거택의 경우 53.2%로 자활의 38.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일의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생활보호유형, 직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표 3-5〉에 나타나 있다. 먼저 한달 평균 20일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23.8% 선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장애등급별로는 2, 3등급이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업, 생산.기능직, 자영업부분에서 50%이상의 응답을 보이고 있었다. 생활보호유형별로는 자활이 21-25일 10.5%, 26-30일 8.3%로 거택의 1.6%, 4.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거택보다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안정된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직업만족도와 새로운 직업

조사대상 장애인 중 직업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이들은 없었으며 만족하는 이들은 14.3%에 그치고 있었고,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이들도 12.6%나 됐다(〈표 3-6〉). 또한 새로운 직업을 얻을 경우 자영업(22.6%)과 단순서비스업(7.2%), 전문관리 사무직(6.7%), 판매서비스업(6.7%)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직업을 묻는 항목에 기타로 대답한 29.3%의 대부분은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다(〈표 3-7〉).

〈표 3-6〉 생활보호장애인 가구주의 직업만족여부

분류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	-
만족한다	17	14.3
그저 그렇다	39	32.8
불만이다	25	21.0
매우 불만이다	15	12.6
무응답	23	19.3
합	119	100.0